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0205-10

www.moe.go.kr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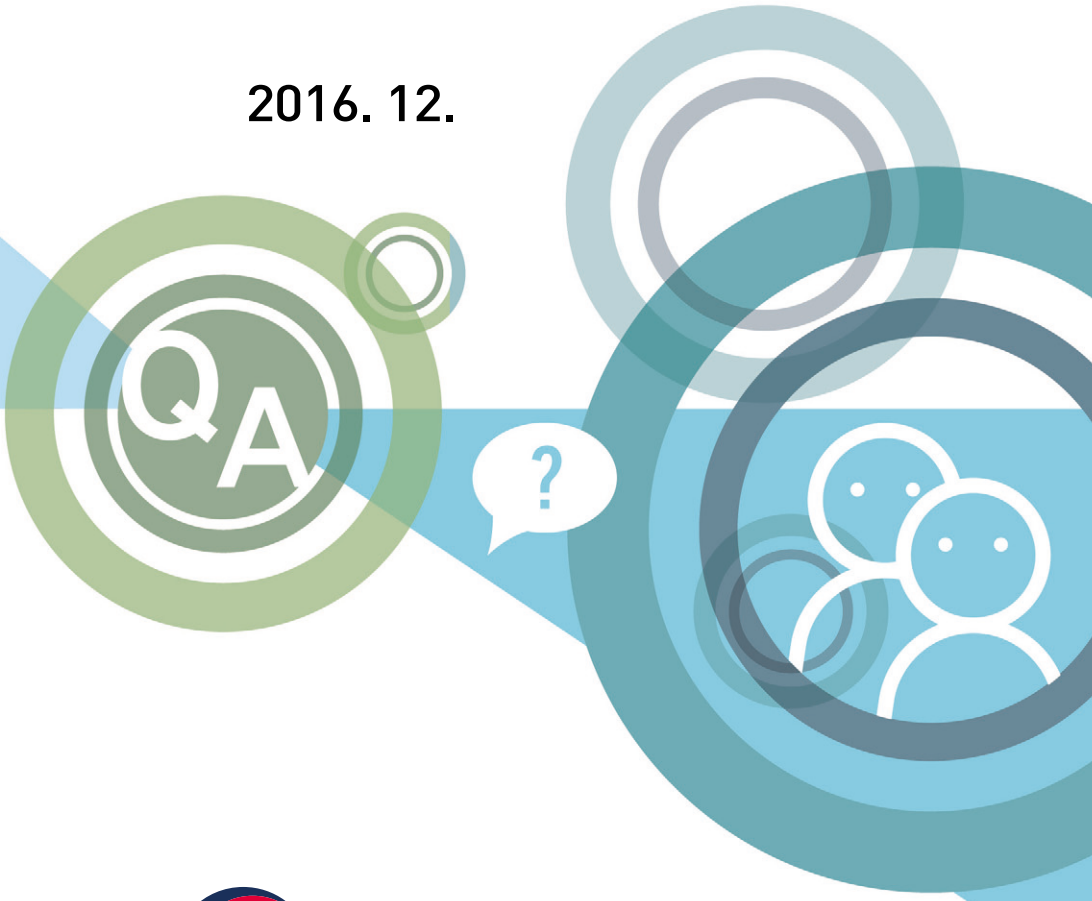

교육부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Ⅰ 유아 · 특수교육

1.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질의 ····· 3
2.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재발급 문의 ····· 3
3.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육경력 관련 질의 ····· 4
4. 유치원 기간제 교원의 가족수당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5
5.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개원에 관한 질의 ····· 6
6.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관한 질의 ····· 7
7. 특수학교 교사 자격 관련 문의 ····· 8
8. 2017년 특수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증원 요청 ····· 8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안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제공 관련 문의 ····· 9

Ⅱ 초 · 중등교육

1. (가칭)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전문 교양 과목 신설 요청 ····· 13
2. 교육급여 수급자 기간 기산일 문의 ····· 14
3. 교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문의 ····· 14
4. 교육봉사활동 관련 지침 문의 ····· 15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 17
6. 해외 학력 인정 목록 추가 관련 ····· 18
7. 교육환경평가 항목 적용(200m 이내 금지시설 적용) 관련 ····· 20
8. 화상경마장 시설 활용 관련 ····· 21
9. 기본이수과목 개설 및 운영 관련 질의 ····· 22
10. 교육대학원 입학 관련 질의 ····· 23
11. 여성기업의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수의계약 진행 절차문의 ····· 24
12.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면제 관련 질의 ····· 25
13. 학교주변에 봉안(납골)시설 설치 가능 여부 ····· 26

14. 교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인정 기간 문의 ····· 27
1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민원 ····· 28
16.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 29
17. 과학고 2학년 수료 처리 관련 질의 ····· 30
18.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한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 입력 관련 ····· 31
19. 교육비 지원 요청 ····· 32
20. 교직과정 개설 운영 관련 ····· 33
21. 2009개정교육과정 관련 문의 ····· 34
2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간이축사 운영 여부 ····· 35
23. 교육과정에서 ‘단위’의 의미 ····· 37
2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시 보건교사 참여 여부 ····· 37
25.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대한 문의 ····· 38
26.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 40
27. 재외한국학교 전학 관련 ····· 41
28. 교사 내 공기 질 부실측정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지 문의 ····· 41
29.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6호 출석정지)로 인한 무단결석 처리 관련 ····· 42
30.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 여부 문의 ····· 43
31.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 44
32.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 45
33. 정원외 학적 관리 관련 문의 ····· 46
34. 귀국 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질의 ····· 47
35. 수석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 48
36. 연수휴직 중 일정한 보수를 받는 연구 보조원을 할수 있는지 여부 ····· 49
3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 관련 질의 ····· 49
38. 사범대학의 교육실습비 부담 관련 질의 ····· 51
39.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정신이상검사 항목 신설 제안 ····· 51
40. 귀국학생의 학적 관련 문의 ····· 52
41.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 53
42. 해외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여부 ····· 54

Contents

43. 원로교사수당 지급요건 중 교육경력 관련 문의 ····· 55
4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질의 ····· 55
45. 종교단체 주관 체험학습의 공결처리 요청 ····· 56
4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질의 ····· 57
47.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관련 문의 ····· 58
48. 수업시각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때의 절차 등 문의 ····· 59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준수의무 관련 문의 ····· 60
50. 국가대표의 출결관리 관련 문의 ····· 61
51. 학교생활기록의 기타결석 처리 요청 ····· 62
52.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질의 ····· 63
53. 전문상담교사로 전과 가능 여부 문의 ····· 64
54. 출석인정결석 관련 질의 ····· 65
55. 다문화 학생의 초등학교 입급 관련 문의 ····· 65
56. 집단급식소의 경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 66
57. 중·고등학교에서의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 요청 ····· 67
58.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시 각종 경력 인정 여부 ····· 68
59. 종교동아리 개설 가능 공문 발송 요청 ····· 69
60.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방안 개선 문의 ····· 70
61. UP 및 KMOOC의 학생부 또는 자소서 기재 여부 문의 ····· 71
62.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소프트웨어(SW)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요청 71
63.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관련 일조량 조사자료 제출 여부 문의 ····· 72
64.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한국사능력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 ····· 73
65. 학교장의 유고에 대한 해석 요청 ····· 74
66.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등 관련 문의 ····· 75
67. 전문상담교사 증원 관련 문의 ····· 76
68. 교원의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병급 지급 관련 문의 ····· 77
69. 인사위원회 설치 등 관련 문의 ····· 78
70. 취학통지서 통지 시 유의사항 안내 요청 ····· 80
71. 건강기록부를 교육제증명 민원사무에 포함 요청 ····· 81
72. 비밀전학 방법 관련 질의 ····· 82

73. 초·중등학교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기준 문의 ····· 83
74.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 83
75. 학교 교사 내 소음측정 대상 및 방법 문의 ····· 85
76.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 문의 ····· 86
77.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공공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의 ····· 87
78. 교원평가제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관련 질의 ····· 88
79.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지속 여부 질의 ····· 89
80.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소급적용 관련 문의 ····· 90
81. 집중이수제의 시행 여부 질의 ····· 91
82. 장기 결석에 따른 수업일수 부족 학생 처리 절차 문의 ····· 92
83. 교육부 후원 교외상 생활기록부 입력 가능 여부 ····· 93
84. 개인 창업관련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여부 ····· 94
85. 교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 95
86. 남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문의 ····· 95
87. 일반병가 사용 관련 질의 ····· 96
88. 외국인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문의 ····· 97
89.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공무원)에 의해 본인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97
90. 교원 연수휴직 중 대학강의 인정 여부 ····· 98
91. 학교규칙 중 ‘휴업일 등교’ 관련 해석 요청 ····· 99
92.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의 소급 시점 질의 ····· 100
93. 교육공무원 직무대리명령이 임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100
9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추천제도 운영 가능 여부 질의 ····· 101
95.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 관련 질의 ····· 102
96. 보건교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 103
97. 질병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으로 변경 가능 여부 ····· 103
98. 교원의 병가 후 연가, 질병휴직의 사용 관련 문의 ····· 104
99. 공무상 병가 및 휴직 요건 관련 문의 ····· 105
100. 교원이 소설 및 시집 출판 가능 여부 ····· 106

Contents

101. 가해학생 조치의 병과 가능 여부 ····· 107
102. 학교 시설을 신설, 증설, 개보수하여 무상공급 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 108
103.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허용 가능 여부 ····· 108
104. 장애인 교원 구분 모집 관련 문의 ····· 109
10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병원 관련 문의 ····· 110
106. 학생 보호자의 범위 관련 질의 ····· 110
107. 초등학교 영어문법 교육 반대 ····· 112
108.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등급 구분기준에 대한 질의 ····· 112
109.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등 문의 ····· 113

Ⅲ 고등교육

1. 학교법인 정관상 교원의 정년을 겸임교원에게도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 ··· 117
2.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 117
3. 대학입시원서 비환불 관련 문의 ····· 118
4. 권역 밖의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관련 ····· 120
5. 의학전문대학원 학부·석사통합과정 재학생 신분 해석 관련질의 ····· 121
6.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야간수업 학위취득 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 122
7. 조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 124
8. 계약학과 제도 개선 건의 ····· 124
9. 국립대 총장임기 만료에 따른 연봉책정 관련 문의 ····· 127
10. 직원 채용 공고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 128
11. ○○대학교 등록금 대폭 인상 관련 ····· 128
12. 대학원 공개 강좌 및 석사학위 수여 관련 ····· 130
13.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자료 무료제공 요구 ····· 131
14. 사립학교 대학병원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32
15. WEST 프로그램 참가 자격 관련 문의 ····· 132

16. 대학교 신입생 엠티에서 불참비 강요 관련 문의 ····· 133
17.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 134
18.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기준 문의 ····· 135
19. 외국인 대학입학 자격 여부 문의 ····· 136
20. 교지 내 모델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 138
21. 사립학교 교직원 겸직 관련 질의 ····· 139
22. 대학원대학 관련 문의 ····· 140
23. 서울대학교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 문의 ····· 140
24. 사립대학 국가 재정 지원 현황 관련 문의 ····· 141
25. 다자녀 장학금 성적 관련 질의 ····· 142
26. 일반대학원의 수업운영 형태에 대한 질의 ····· 143
27. 각급학교 소속 사무직원 임용 관련 문의 ····· 144
28. 산학협력단 관련 질의 ····· 145
29. 제3국 수학인정서 영사확인에 대한 문의 ····· 146
30.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관련 문의 ····· 147
3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관련 문의 ····· 148
32. 전환복무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 149
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법령 해석 요청 ····· 150
3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 여부 ····· 151
35.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 153
36. 국립대학 교수 초임호봉 획정 관련 문의 ····· 154
37. 교육대학원 평가 및 인원감축 관련 질문 ····· 155
38. 해외대학 교직과목 국내인정 관련 문의 ····· 156
39. 사립대학 조교(일반조교) 경력 인정 문의 ····· 157
40.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관련 문의 ····· 157
41. 인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전문대학원 강의 운영 관련 문의 ····· 158
42. 대학에서 양질의 취업처 정보안내 요청 ····· 159
43.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질의 ····· 160
44. 산학협력단 회계 등록 재산에 대한 운영 처리 ····· 161
45. 대학 캠퍼스 이전 관련 문의 ····· 162

Contents

46.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의 직종 문의 ····· 162
47. 대학교 인문계 출신 취업자 전형 지원가능 대학교 문의 ····· 163
48. 서울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직원 직종 및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관계 문의 ····· 164
49. '대학' 과 '대학교' 표기관련 질의 ····· 165
50.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소득분위 산정시 처분한 재산 반영 여부 ····· 165
51. 계약학과 가을학기 개설 및 개설 절차 문의 ····· 167
52. 비전임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168
53. 계약학과 담임자격 관련 문의 ····· 168
54. 임시이사 선임 관련 질의 ····· 169
55. 국립대 총장임용이 승진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170
56. 고른기회 특별전형 관련 문의 ····· 170
57. 계약학과 경력인정절차 관련 문의 ····· 171
58. 일반대학원 야간강의 개설 관련 문의 ····· 172
59. 일반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가능 여부 ····· 173
60.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위과정 수업 장소의 이동(변경) 가능 여부 ····· 174
61. 전문대학 설립시 호텔 관련 학과 생길 경우 부속시설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 ····· 175
62.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관련 문의 ·· 175
63. 체육 특기자 사전 내정(사전스카웃)은 적법한가? ····· 176

Ⅳ 교육안전정보

1. 사이버대학의 역사전공 신설 검토 요청 ····· 179
2. 학교시설 사용승인 시 적용해야 하는 법규는? ····· 180
3.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요청 ····· 181
4. 학교시설 준공신고서상의 시공자 및 현장관리인 서명날인 의무 여부 ····· 182
5.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지원 요청 ····· 183

6. 학교급간(초·중·고) 진학시 생활기록부 마감 이후 봉사활동시간 반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184
7. 학교 건물 건축 관련 질의 ····· 185
8.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복합시설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186
9.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 요청 ····· 186
10. 나이스 상에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검색 관련 문의 ····· 187
11. 디지털교과서(사회교과)의 해외사례 요청 ····· 188
12. 체육시설의 포함 범위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질의 ····· 189

V 평생교육

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소독 및 방역기준 여부 ····· 193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설치 요청 ····· 193
3. 소득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해당여부 ····· 194
4. 민간자격증 발급 규제 관련 ····· 195
5.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문의 ····· 196
6. 학원 홈페이지에 교습비 등의 표시 의무 문의 ····· 197
7.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강화 건의 ····· 198
8.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유아교습 가능 여부 ····· 199
9. 언론기관 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질의 ····· 200
10.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진학상담교사로의 임용에 대한 가능 여부 ····· 201
11. 진로진학상담교사 임용 관련 질의 ····· 202
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 질의 ····· 203
1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휴일”의 유권해석 ····· 204
14.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 205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간 관련 문의 ····· 206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등의 의미 질의 · 207
17. 교육행정직 7급 합격자의 경우 독학학위시험 면제범위 관련 질의 ····· 207
18. 외국자격의 국내 통용 가능여부 질의 ····· 208

Contents

Ⅵ 기타

1.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관련 ····· 211
2. 임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정보공개의 우편 접수 타당성 여부 ····· 212
3. 공무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 213
4.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접수일자 관련 ····· 214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및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 ····· 215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공공저작물 활용 범위 관련 질의 ··· 216
7. 한국사능력시험 저작권 관련 문의 ····· 217
8.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관련 ····· 217
9. 국비유학 관련 문의 ····· 218
10. 중국유학 정보 관련문의 ····· 221
11. 남미 쿠바에도 교원해외파견 및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민원 ····· 222
12. 한국어 교재 개발 요청(불가리아) ····· 223
13. 한국어교재 공급 요청 ····· 223
14. 한국어 어학당 및 대학교 유학 가능 학교 검색 방법 문의 ····· 224
15. 해외유학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 225
16. 정부지원 국비유학 전공 분야 관련 질문 ····· 226
17. 파견 근무 관련 문의 ····· 227
18. 국비유학시험 선발 분야 문의 ····· 228
19.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지역 시험 시행 증설 요구 ····· 229

Ⅶ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233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7

Part

I

유아 · 특수교육

유아교육

1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질의

Q 질의

다른 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예산 확보를 통해 누리과정예산 예산 해결

A 회신 2016-01-26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으로,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12년 최초 도입 시기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6년도에는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체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였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제도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16.12.2.)을 제정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2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재발급 문의

Q 질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분실된 듯하여, 부득이하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때는 2010년 02월 10일 전후입니다.

A 회신 2016-02-04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문의하신 유치원 교원 자격증 재발급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부여한 대학에 신청하시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및 교육경력 관련 질의

Q 질의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원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에도 유치원 경력만 인정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2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경력의 범위는「교원자격검정령」제8조에 의해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유치원 기간제 교원의 가족수당 소급 적용 가능 여부

Q 질의

올 3월에 가족수당을 신청하라는 행정실의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해서 지금 년도에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도 가족수당 소급신청을 받으려고 하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급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담임수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소급이 되고 가족수당은 소급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11-2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수당의 소급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해서 소멸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5년 근무하신 기간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한 사항이므로 행정실에 다시 가족수당 소급분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개원에 관한 질의

Q 질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2015년 인근에 있던 유해업소를 인수하고 유치원 설립기준에 맞게 원을 공사하고 인가에 필요한 집기와 설비를 갖추어 2015년11월30일에 유치원 설립인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해당 구청에서 처리가 지연되어서 3월2일자 개원시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개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A 회신 2016-06-09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개원여부는 「유아교육법」제8조에 의거 교육감의 인가사항이므로 해당 관할청이 관련 사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 시 개원일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학기 중 개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수업일수, 휴업일, 교육과정 구성 등에 따라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어 가급적 이에 맞춰 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관할청의 인가여부를 반드시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주변 유아교육기관 현황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6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에 관한 질의

Q 질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A 회신 2016-06-15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을 희망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아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의거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인 매년 3월 31일까지 동 규정에서 정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에는 개교 예정일 3개월 이전인 2016.11월말까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개교예정일 3개월 전 인가신청서 제출은 설립계획 승인절차의 예외적인 사항이며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원이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출서류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수교육

7 특수학교 교사 자격 관련 문의

Q 질의

1. 장애학생을 교육하려는 교사의 자격은 어떠한가요?
2. 자격이 없이 교육하면 위법인가요?

A 회신 2016-02-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교육교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특수교육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합니다.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교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 특수학교 교사란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2017년 특수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증원 요청

Q 질의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학부모의 관심 증가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특수교사 확보율은 약 60%에 머물러 있고 2017년 임용시험 사전 예고 결과, 초등은 100명이 조금 안되는 수, 중등은

100여명 남짓 발표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및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회신 2016-06-23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인원수는 교육부가 매년 행정자치부에 특수교사 정원을 신청하여 증원하는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교육부는 올해에도 행정자치부에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부처 간 협의 및 절차가 완료되는 10월경 확정된 증원 인원을 반영한 후,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최종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 특수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은 234명이었으나 최종 선발 공고 인원은 762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17년 특수교사 증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안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제공 관련 문의

Q 질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의 치료실이 아닌 일반학교의 거점 치료실에서 장애학생이 순회 물리치료사 또는 순회 작업치료사에 의해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와 같은 치료지원을 받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적 노력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A 회신 2016-11-22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에 특수교육대상자는 필요로 하는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항에 의거,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가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제공받을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에 따른 촉탁의 또는 처방전을 토대로 한 치료지원(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와 같은 의료기사에 의한 치료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Part

Ⅱ

초 · 중등교육

1 (가칭)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전문 교양 과목 신설 요청

Q 질의

선거에 대비하여, 고등학교에 가칭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전문 교양과목을 즉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0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치 의미와 기능, 역할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주요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민주 정치와 법의 관련을 다루고,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성과 과제를 학습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정치교육을 내실 있게 실행하고, 학생들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15.9.23.)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법지식 자체만을 전달하기보다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의식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에서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도록 하였고, 중학교 사회에서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실생활과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를 신설하여 모든 고등학생들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에서는 초·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의 기능과 정부 형태, 지방 자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교육급여 수급자 기간 기산일 문의

Q 질의

저희 가정의 경우 학교에서 저소득가정으로 분류되어 동생이 고1부터 고3까지 급식비, 등록금등 교육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로 인해 지금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가정의 수급자 기간은 교육급여수급자로 지정된 날 부터 계산 하는게 맞는 것 인지? 등록금,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하는게 맞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0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기존에 급식비, 등록금 등을 지원받으시던 것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급여와는 다른 사업이어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교육비 외에 교육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급여 신청일 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수급자 기간은 교육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3 교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문의

Q 질의

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에서 교직이수를 하였으나 무시험검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원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원 2급 정교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대학원 진학 외에는 답이 없는거

같은데 교직이수를 하였으나 무시험검정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지 못한 경우 '타 대학에 학사편입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방법 혹은 그 외에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대학원 진학이 타당하며, 사범대학에 편입으로 입학허가를 받게 되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전공에서 타 대학 교직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가 될 가능성이 적거나 불가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사자격취득 또한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니 진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교육봉사활동 관련 지침 문의

Q 질의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교육실습-교육봉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82페이지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에서

1. "대학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학생들에게 계획서를 받아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대학에서 사전에 계획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교원자격취득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이수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이 편람에 의하면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간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편람에 의해서 인정 가능한 기관의 범위가 더 넓은데, 만약 대학에서 운영할 시 교육봉사 가능기관을 "학교에서 지정한 특정 지역 내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만 한 것을 교육봉사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대학의 자율이면 특정학교만 정해서 운영해도 (학생들의 민원은 있을 지라 할지라도 대학의 장이 정한대로 해도 운영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면)지침에 위배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1-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한 교육부 지침입니다. 이에 지침에서 명시된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며, 지침의 내용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와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각 대학의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유와 결과를 포함한 근거를 남겨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1. (사전에 계획서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 유치원생 및 초중고학생이 대상인지,
   ⓑ 교수요목에 제시된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생활지도 등의 활동인지,
   ⓒ 활동가능 기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대학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2. (교육봉사활동기관 선정 관련)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제2014-48호)' 제6조9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대로 특정 초등학교로만 한정하여 제시하

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법과 지침에서 명시된 부분을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Q 질의

민원인의 자녀(1964년생)는 1970년 충주 소재 A 초등학교 입학, 1972년 3월 서울 서부교육청 소재 B초등학교로 전입, 1972년 5월 서울 서부교육청 소재 C 학교로 전출 후 C 학교에서 졸업 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 상에 70년 충주 소재 A초 입학, 72년 B초 전입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보니 70년에 서울 소재 A초에서 입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원인은 70년에 충주 소재 A초에서 입학한 사실과 72년 3월에 서울 B초에 전입한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정정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생활기록부 정정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하여 최종졸업학교인 C초등학교에 요청하셔야 함을 안내했으나 다음과 같이 추가 질의를 해왔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로 다음 자료를 구해서 최종졸업교에 정정요청했을 경우 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할지 문의하여 질의드립니다.

- 충주 소재 A 초등학교에 함께 다녔던 민원인 자녀 동료들의 인우 보증
- 충주 소재 해당 마을에 함께 거주했던 주변인들의 인우 보증 -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72년에 서울로 전입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고 함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사실이 기록된 것이지 실제 학생이 충주 소재 A학교에서 입학하여 B학교로 전출했다는 직접적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 회신 요청 사항

1. 위의 자료로 최종졸업교인 C학교에 생활기록부 정정요청시 C학교의 학업성

적관리위원회에서 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할지요?(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여부가 쉽지 않아 교육청으로 다시 문의가 들어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민원인의 질의를 받은 저로서는 해당 자료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주 소재 A초등학교에 다녔던 기록물(출석부, 통지표 등)들이 있어야 할 텐데 관련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2. 민원인은 해당 자료들로 생활기록부 정정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을 하시도록 안내드려야 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학습평가지원팀]

인우보증은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나, 그외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시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현 지침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6 해외 학력 인정 목록 추가 관련

Q 질의

아이가 대만의 정식 미국학교에 재학 중 이었으며, 2016년 3월에 한국학교로 전학 예정입니다. 주재원발령으로 인한 가족전체 이주였으며 한국학교 입학시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의거하여 서류를 준비 하려 하였으나 인정학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만에 입국하여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1월 18일까지 인정학교 목록에 등재여부가 가능한지, 등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1-1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지난 2014년 8월 22일 우리부에서는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던 것입니다. 귀국학생의 서류 간소화 조치에는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등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되어 있는 21개국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목록에 없다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만으로 모든 서류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정규교육기관임을 인증하는 자료를 해당 공관에 제출하시면, 해당 공관에서 교육부로 목록 추가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교육부에서 학교 목록을 최신 자료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교육환경평가 항목 적용(200m 이내 금지시설 적용) 관련

Q 질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된 부지에 접하여 있는 땅에 유치원을 건립할 경우 유치원 건립용지와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물은 300m 이격되어 있는 경우. 정화구역 200m의 제한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시설인 건축물 및 시설행위 거리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치원 건립용지가 비록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와 접하여 있으나 폐기물처리건축물과는 300m이격이 되어 있으며 300m이내에는 비록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이지만 공원, 녹지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A 회신 2016-01-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 건립용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격되어 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일부가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이 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 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만을 운영하기 위한 용지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화구역 설정 고시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화상경마장 시설 활용 관련

Q 질의

화상경마장은 초등학교 등에서는 50m 내에서는 절대 불가 200m 내에서는 심의 등을 통하여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박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화상경마장에서 경마를 운영하지 않는 날 빈 공간을 활용 및 북카페 등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및 아이들에게 개방하여 유도를 할 경우 교육적인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A 회신 2016-01-1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외발매소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경마·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상대정화구역 내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학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귀하가 우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완전 금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청소년보호법('14.3.24 개정, '14.9.25 시행)개정 심의과정에서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

장의 경마 및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시킨 개정법률의 시행이후 경과를 지켜보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경마·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기본이수과목 개설 및 운영 관련 질의

Q 질의

2015. 11. 17.자로 교원복지연수과에서 고등교육기관전체에 발송한 '교육부 고시 개정사항 안내 및 도움자료 배포(안전교육 강화 관련)' 공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본이수과목으로 '초등안전교육'을 반드시 신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2. '초등안전교육' 과목은 운영할 때 학점 및 운영방식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요? ex) 초등안전교육 P/F 운영

A 회신 2016-01-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1. (반드시 기본이수과목으로 신설해야 하는지?) 기본이수과목은 전공 50학점 중 7과목이상, 21학점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안전교육 교과목 개설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안전과 생활' 교과목이 신설되는 만큼 교육대학에서는 기본이수과목 혹은 전공으로 신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양지 바라겠습니다.

2. (학점 및 운영방식) 기본이수과목으로 개설할 시에는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이므로 7과목을 개설할 경우 3학점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이 기준이며, 전공으로 개설할 시에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0 교육대학원 입학 관련 질의

Q 질의

저는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공통사회 자격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사회교육과와 역사교육과의 전공을 각 9학점씩 수강하였으며, 성적증명서상 “교직연합전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현직교원 자격으로 역사 부전공을 표시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려 하는데, 학부 때 취득한 역사교육과 전공 9학점을 대학원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1-2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대학원 부전공의 무시험검정은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하께서 연계전공으로 취득하신 학점은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부 때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는 교육대학원의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합니다. 이에 입학하고자 하시는 교육대학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학점 30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이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단, 4학기제 이하 과정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여성기업의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수의계약 진행 절차문의

Q 질의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방과후교실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지방계약법"에 의하지 않은 별도의 규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 절차도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01-2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방과후학교지원과]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 이더라도 시도교육청 수의계약 운용 지침 등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추정가격 2만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시·도교육청별 1인 수의계약 대상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면제 관련 질의

Q 질의

현재 저는 학부에서 화학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시 영어과 학사학위를 받아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원 양성과정에 있습니다. 2015 교원자격업무 편람 (p.80)에 의하면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 자격종별과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학교현장 실습과 교육봉사)를 면제 가능함”이라고 나와 있고 교육봉사는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부에서 이미 타교과(화학)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기에 양성위원회 결정 없이 교육봉사가 면제가 된다고 생각되어 교육대학원에 의뢰한 바 교원자격증 취득시 교육봉사를 하지 않았으니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양성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기존의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봉사를 해야한다 또는 학교현장실습처럼 양성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등의 단서를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회신 2016-01-2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5년, 80쪽, 117쪽)'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음이라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교육실습영역인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 모두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표시과목이 다른 관계로 인해 대학의 장이 교원양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3 학교주변에 봉안(납골)시설 설치 가능 여부

Q 질의

불법설치 묘지 불법설치 묘지 합법화(양성화)에 관한 질의관할행정청에 적법한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 지역에 불법묘지를 설치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법화(양성화)가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현재 묘지설치 지역

1.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 현실지목 전[밭](법정지목 :학교용지)
2. 학교시설정화구역(학교토지 경계선으로 100m이내 절대정화구역내 토지)
3. 묘지설치금지구역(학교인가, 도로 등)

A 회신 2016-01-2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이라 함)으로 설정·고시하고, '납골(봉안)시설' 등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설묘지의 경우 현행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납골시설'만 규정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으로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하면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동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교원 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인정 기간 문의

Q 질의

제가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가 2012년 01월 14일인데, 올해 2016년도에 2017 중등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려 합니다. 이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까? 1차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1월 1일 이후라면 가능한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A 회신 2016-01-2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에 따르면 1차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중등 신규임용전형 1차 시험 일정이 2016년 연내에 있을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민원

Q 질의

두 팀으로 나누어 남자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한 팀은 제 아이 A가 대장이었고 다른 팀은 다른 아이가 대장이었습니다. 반 친구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B가 저의 아이 A가 대장을 하고 친구들을 시켜서 때리게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 A는 전쟁놀이는 폭력이 아니라 놀이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놀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어디에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회신 2016-02-0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민원에서와 같이 친구와의 장난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관련 학생 및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교사나 어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장난, 괴롭힘 등이 피해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를 말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나, 행동수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가해학생 모두 차후에 더 큰 문제를 보일 수 있기에 학교에서

유의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국립 및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이번 사안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어 다시 한 번 조치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의 경우 00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리 연락하시어 행정심판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안내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6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Q 질의

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이제 학교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근무중인 학교에서 실습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습기간중 월급을 받지 않고 교생실습을 할 예정인데 법적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2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대학이 책임지고 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력학교에 지도할 교사로서 전문상

담교사(1급 권장)가 정해져야 하며, 학교 내에 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으로 제시된 학교현장실습 운영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학교현장실습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장과 지도교사의 의견과 계획 등을 첨부하여 다니시는 교육대학원 교직담당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7 과학고 2학년 수료 처리 관련 질의

Q 질의

KAIST 입학제도 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에 따라 KAIST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입학전형에 지원 후 다른 고3 학생들과 경쟁하여 합격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8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8조 1항 4호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졸업 시 졸업 구분(예: 수료, 조기졸업, 졸업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신 2016-02-0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현행법상(초중등교육법 제27조)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조기졸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가 조기입학 자격을 얻고 과학기술대학 입학전형에 합격한 경우 졸업자와 동등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조기입학 자격을 얻지 못해도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경우, 조기

입학은 가능하나, 조기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졸업 처리는 불가하여 2학년 수료 처리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이스시스템 상의 2학년 수료 처리 기능이 미흡하여 향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18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승인한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 입력 관련

Q 질의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이 가능한지에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2-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학교장이 승인한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생부 기록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 모두 입력하지 않습니다.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쪽) 따라서 지난해 일본에서 활동한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금년에 계획된 한국에서 일본학생들과의 청소년단체 체험활동은 학생부 입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귀하의 의견과 다소 달라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대입 전형에서의 학생부 비교과영역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도한 해외체험활동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교육비 지원 요청

Q 질의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늦둥이로 태어난 쌍둥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질의를 해봅니다. 아이가 한 명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두 명을 동시에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요.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2-2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 및 학교장 추천제도, 교육급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교육비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4대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를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을 보유한 경우와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중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은 가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각

학교에서는 부모의 사망, 이혼, 파산, 실직 등 사유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빙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학기 초 해당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219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일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16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초중학생 부교재비(연 39,2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53,3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연 131,300원)이며, 그 외 통신료 감면 등 다른 사업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교직과정 개설 운영 관련

Q 질의

안녕하세요 00대학교 대학원 학생입니다. 마지막 5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1학기)만 졸업하면 교원자격증과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교직이수를 하기 위한 필수과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수강하여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둔 사람이 한 과목 때문에 다음 학기를 학비를 내고 또 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수과목이 개설하지 않고 그 필수과목을 계절학기로 돈을 내고 들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이 필수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1학기에는 개설하지 않고 계절학기에 개설하여 듣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A 회신 2016-02-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1. (우리부 답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①항에 따라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①항5호에서 학교규칙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외의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00대학교 답변) "00대학교 교과과정은 학칙 제68조 ~ 70조, 교과과정 편성 및 이수규정 제 2조~7조에 따라 편성되며, 학칙 및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이수학점 가운데 교직소양과목으로과 과목을 매년 2학기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의 해결 대안은 2016학년도 개설예정인 하계계절학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 되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2009개정교육과정 관련 문의

Q 질의

올해 고2 되는 문과 여학생입니다. 제가 몇 차 교육과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몇 차 교육과정이고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2-2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교육과정 차수는 1997년 고시된 제7차교육과정 이후에는 별도의 차수를 지정하지 않고 개정된 해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제한하였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의 특별활동이 4단위였던 것을 12단위로 확대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비교과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만 지정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다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로는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교과 16단위로 총 86단위이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과정이 9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 이어서 3년간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에 총론과 각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간이축사 운영 여부

Q 질의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본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간이축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대지 일부가 상대정화구역에 걸쳐 있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상기 법에 저촉된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1항7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22.자원순환 관련시설의 세부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본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간이축사)는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 되는 용도로 사료 되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7호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때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여,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A 회신 2016-03-0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습 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하고, 동 구역 내 '축산폐수(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축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교육과정에서 '단위'의 의미

Q 질의

교육과정에서 국어10단위 수학10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뭔가요?

A 회신 2016-03-0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교과 16단위로 총 86단위입니다. 여기에서 단위의 개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1단위라 하며, 2단위는 50분×2회×17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시 보건교사 참여 여부

Q 질의

학교폭력 법령에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학교사정에 따라 보건교사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A 회신 2016-03-0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

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법률에 명시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지도부장이나 상담부장) 등으로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며, 보건교사의 경우 아래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피해,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②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③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고)

25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대한 문의

Q 질의

2015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에 진급하는 자녀를 2015년 3월 2일자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시켜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되었다가, 2015년 6월 18일에 다시 재취학을 하였습니다. 재취학 후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자녀는 현재 00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유급되면, 2016학년도에도 5학년에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단결석 및 대안학교에 입학시켜 3개월이 지나 정원 외 관리 처리된 직후, 바로 재취학을 신청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 2016학년도

6학년으로 진급을 요구하겠다며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1.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무단결석을 용인해도 되는 것인가요?
2. 진급을 위해 무단결석 및 대안학교를 이용하여 정원 외 관리와 재 취학을 반복한 후 진급하는 것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민원인 요구대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A 회신 2016-03-07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르면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장이 조기진급·진학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학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유급처리된 5학년 학생이 무단결석으로 유예된 후 재취학 신청을 통한 6학년 진급 요구에 따른 판단 : 해당 절차는 현재 법률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6학년으로의 재취학에 대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의무교육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무단결석을 용인여부 : 해당 학생이 무단결석 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여 무단결석에 따른 추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교과목 이수인정 평가 본래 취지에 부합 여부 : 이수인정평가는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적정학년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평가의 결과 민원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는 있으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꼭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판단은 해당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Q 질의

의무 취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만 17세의 미취학 아동(초·중학교 취학한 사실 없음)을 취학의무 면제 시킬 경우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각각 취학의무 면제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취학의무 면제를 받았을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초졸 검정고시 자격 취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3-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을 규정하지 않아 의무교육 연령 초과에도 불구,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초중학교 취학이 가능합니다. 취학의무 면제는 학력인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즉 취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동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학력인정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7 재외한국학교 전학 관련

Q 질의

재외한국학교에서 재학(2년 미만) 중 한국의 중학교로 전학시 해당 중학교의 정원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 외 인원으로도 전학이 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3-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으로 간주되며,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전출입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이동 시 국내학교와 동등한 전출입 절차를 따르므로, 정원 내 전입인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전편입학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전입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소관 교육청에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교사 내 공기 질 부실측정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는지 문의

Q 질의

학교의 실내공기 질 측정 시 측정업체가 공정시험법에 따라 측정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면 등록해 준 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3-1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관련 유지·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축학교에 대한 공기 질 점검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2-24호) 및 관련 지침(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측정대행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과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준수사항 위반내용을 알리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6호 출석정지)로 인한 무단결석 처리 관련

Q 질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여 관련 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 결정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입력하였으며, 졸업과 동시에 내용을 삭제(자치위원회 심의 후)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6호(출석정지) 조치 때문에 출석비고란에 '무단결석 00일'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무단결석이라는 말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가해 관련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3-1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8에는 가해학생이 3호~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6호 출석정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8조4에 따르면 졸업과 동시에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6호 출석정지)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무단결석에 대한 부분은 삭제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0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 여부 문의

Q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행 교육과정 체제로 보면 1학기용 2학기용 교과서가 따로 편찬되고 있습니다. 이 때 1학기 교육과정을 반드시 1학기에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과정 순서를 재구성하여 학기를 변경해 교육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17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를 학년군 단위로 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을 학교 사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별 이수시간도 학년군 단위의 이수시간이므로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년군 단위의 교육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단위학교 또는 교사가 가르치는 시기 등을 재구성할 때는 교육내용의

난이도, 체계, 연계성과 학생의 전학 등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결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1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Q 질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2년에 졸업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학교에서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회신 2016-03-2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첫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의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2012년에 졸업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현시점으로는 학교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 되며, 상기 훈령 19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의 정정 2항에 해당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이 가능하여 보입니다. 둘째, 상기 훈령 제19조 2항에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처리해야 한다.' 셋째, 객관적 증빙자료는 통념적으로 자료의 정정과 관련하여 객관성이 보장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또한 범위는 광범위하여 별도의 정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2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

Q 질의

중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1급 정교사 자격 검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리교육을 전공하고 지리 2급 정교사와 공통사회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 공통사회로 발령을 받아 4년을 근무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타시도 전출로 현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리로 전입하게 되었으며 현재 10년차 근무 중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은 공통사회 1급 정교사, 지리 2급 정교사이며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석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석사학위로 지리 2급 정교사에서 지리 1급 정교사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졸업한 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1정연수와는 달리 점수산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기준 1호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지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지리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리로 임용되어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발급이 가능하므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자격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직위 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할 때에는 A학점이상은 만점의 90%, B학점이상은 만점의 85%, D학점이상은 만점의 80%로 평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정원외 학적 관리 관련 문의

Q 질의

초등학교 정원외 관리에 관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시행 2016.3.1.]에는 정원외 관리가 무단결석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2016년 법이 바뀌었다며, 정원외 관리가 무단결석 65일(수업일수 1/3)이상이 현행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현행 법률이며 3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정원외 관리일은 언제인가요?

A 회신 2016-03-2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50조를 기반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정원외 관리 기준 – 무단결석 3개월 이상의 경우 : 학생이 연속적 3개월 이상 무단결석 한 경우 – 결석일수 1/3 이상의 경우 : 학생이 비연속적으로 수업일수의 1/3이상의 결석한 경우
2. 정원외 관리 기준일 – 연속적 무단결석에 따라 3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

3월 1일 학적 생성의 경우 6월 1일 이후 정원외 관리가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2017.3.1.시행)]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장기결석한 학생

34 귀국 학생의 학력인정 관련 질의

Q 질의

학부모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중국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캐나다에서 4년간 11, 12학년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영어 12학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되었으나 주에서 보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외국학력 인정과 관련하여 졸업장이 없더라도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것만으로도 학력인정이 된다던데 가능한가요?

A 회신 2016-03-28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정확히 부합되는 내용이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상기 법령으로는 관련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교육부에서는 2015년 2월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를 시도교육청으

로 전달하였고, 이에 따르면 외국의 학제가 국내와 다를 경우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학력을 인정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캐나다에서 4년간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의 교육을 받아 총 14년 간 학교를 다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도교육청 안내 자료의 근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인정되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학력의 최종판단은 해당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5 수석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Q 질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학교 수석교사 선생님은 교육경력 30년 이상에 만55세 이상으로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자이지만, 전임자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현재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가 교직수당가산금1 지급대상인지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3-2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2호 다목1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원은 교사와 수석교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 제20조에 따라 수석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임무를 겸하므로 상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연수휴직 중 일정한 보수를 받는 연구 보조원을 할수 있는지 여부

Q 질의

연수 휴직을 하고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해당 연구 팀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하게 될 것 같은데, 연수휴직 중일 경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연수휴직 중 대학의 연구용역 팀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연구보조원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은 휴직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영리행위 금지, 겸직허가 등의 복무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비 정도의 수당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허가권자에게 판단 받아야 합니다. 동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 제26조의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 관련 질의

Q 질의

100가구 미만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A 회신 2016-03-3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상기와 같은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1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010년(지방교육재정팀-1794(2010.3.23))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30㎡인 경우에 한함)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1~2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취학수요를 유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3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항으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0㎡초과~50㎡이하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38 사범대학의 교육실습비 부담 관련 질의

Q 질의

중등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범대학교에서는 4학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2학점)'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4주 간 일선 학교에 나가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습비'라는 것을 각각 학교에 개별적으로 10만원 가량 납부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이라는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등록금 내에 청구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실습비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0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3] 비고1. 대학은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민원인께 교육실습비 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업료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정신이상검사 항목 신설 제안

Q 질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험에 정신 이상 검사 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4-0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현재 임용시험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받은 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합격이 취소되며 불합격 판정기준에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등 정신계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부에서는 올바른 교직소양과 교육자적 자질을 갖춘 교원 선발을 위해 앞으로도 임용시험 실시기관인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 귀국학생의 학적 관련 문의

Q 질의

귀국학생의 학적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본인의 자녀는 부(공무원)의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전 가족이 2년간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출국 당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재학하였습니다. 미국 공립초등학교 5학년에 배정받아 재학(5학년 1학기 중복)하였고, 귀국 전까지 미국 공립중학교 6학년을 수료하였습니다. 귀국 시 한국 중학교 1학년에 곧바로 재취학이 가능한지, 중학교 재취학시 학년 배정을 위한 진급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4-1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경우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취학과 학년 배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시도교육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귀국학생의 경우 학교 복귀 시점으로부터 수업일자를 적용을 받으며, 학교 복귀 시점이후 2/3이상을 출석할 경우 진급이 가능함)

41 취학의무 면제 관련 질의

Q 질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본교에서는 학교부적응으로 유예(정원외관리)를 하였던 학생에게 재취학을 권고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및 수차례 가정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며 취학의무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의무교육 학생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부모의 의견서(취학의무면제신청서 포함) 및 학생 면담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와 본교 학칙 제8장 23조(취학의무면제)에 규정을 적용하여 취학의무 면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장학사로부터 취학의무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학의무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회신 2016-04-1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따르면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며, 학교 부적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재취학 의사가 없더라도, 취학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는 초·중학교 모든 교육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해당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 받았을 경우, 면제처리는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42 해외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인정 여부

Q 질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졸업생과 교육부 인가 없이 해당 국가에 외국인 학교로 등록된 한국인학교의 졸업생을 해외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인정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4-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우선 해외에 존재하는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민원인님께서 제시하신 재외한국학교와 일반 외국인학교(교육부 인가 없는 한국인학교 포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재외한국학교 (관련법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집니다.
2. 외국인학교(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 관련 법률에 따라 각 학교별로 학력인정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별로 학년제가 다를 경우 수학년도를 바탕으로 학력이 인정됩니다.

43 원로교사수당 지급요건 중 교육경력 관련 문의

Q 질의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 지급 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학교근무중에 유학휴직으로 다녀온것도 교육경력으로 산정되는지요?

A 회신 2016-04-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2호 다목1(교직가산1)의 원로교사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으로, 그 지급 요건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급요건에서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질의

Q 질의

지방공무원(행정실장 또는 행정계장)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지 않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겸임이 가능한지와 겸임신청을 누구에게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회신 2016-04-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부모지원팀]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므로, 행정실장 등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의 겸임신청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에 의거하여 소속기관의 장(학교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45 종교단체 주관 체험학습의 공결처리 요청

Q 질의

고3학생이 약 10일간 교회에서 주관하는 미국체험활동을 가는데, 도교육청 체험학습 근거에는 집단(교류)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가 아닌, 교회에서 주관하는 미국선교활동 차 갔다 올수 있는지? 만일 간다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공결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우선,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위를 한정하여 무분별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 중 종교단체 주관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미국선교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학교장의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4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질의

Q 질의

학교에서 학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전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는 중 동아리활동에 누락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0여개의 동아리에서 반장 부반장을 기록해야하는데 그 중에 누락학생이 몇 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장, 부반장 명단을 결재 받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반장, 부반장이였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4-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동아리활동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판단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관련 문의

Q 질의

1) 기타 체류자격인 G-1비자 인도적체류자 자녀(외국인등록증은 발급받음)가 초등학교에 입학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 또 의무교육혜택을 난민인정 자녀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학구를 위반하여 입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다문화예비학교라는 이유로 등하교 교통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학구와 관계없이 외국인 자녀를 무조건 우선 배정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1. 인도적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여부 :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2조1항에 의거, 인종, 출생, 신분 등에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의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초등학교 입학관련 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의거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취학이 가능하며, 동 시행령 제75조, 제89조의2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구 조항과 관련하여 시도교육

청마다 별도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학생과 난민학생 등과 관련한 학구규정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됩니다.

3. 외국인 자녀의 우선 배정 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4항에 의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학구 내 일반학교에 편입학하고 지역 내 다문화예비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8 수업시각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때의 절차 등 문의

Q 질의

수업 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의 의미와 수업시각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때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4-2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1교시 수업의 시작 시간이고,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마지막 수업의 종료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업시각은 학교장이 정하게 됩니다. 다만 수업시각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제1호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수렴과정 등 절차는 동법동조항제13호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준수의무 관련 문의

Q 질의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둘째,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 등에게 이 법에 따라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부여되는 비밀은 동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명시된 개인정보 뿐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즉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한다면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내용 진술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용 진술을, 목격자가 자신의 목격내용 진술을,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내용 진술을 다른 절차나 다른 곳에서 다시 발언한다고 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한 비밀준수 의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A 회신 2016-04-2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제21조 상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신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학폭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직무로 알게 된 비밀, 기타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은 누설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0 국가대표의 출결관리 관련 문의

Q 질의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이 이번 브라질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학생이 국제 대회 참여 및 국가대표 훈련으로 인해 학교를 나오지 못할 경우 출결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4-2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안내 사항에 따르면 출석인정결석에는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경연대회 참가...'로 처리합니다. 기 사항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국가대표는 공적의무에 해당하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따라서 학생선수가 국가대표(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학교장(또는 학부모는)은 시도교육청(또는 대한체육회)에 요청하여 국가대표 선수 및 훈련(대회)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 권한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원인님께서 국가대표로 인해 발생한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을 학교장(또는 학부모)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출석인정결석의 본 취지가 지켜짐을 안내드립니다

51 학교생활기록의 기타결석 처리 요청

Q 질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기타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발레리나가 꿈인 학생이 학기중 뉴욕에서 열리는 YAGP콩쿨에 참가하는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면 기타결석이 가능한가요?

둘째, 학교추천으로 인한 학교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학기중 운동대회나 예능콩쿨에 참가하는 경우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기타결석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기타결석 처리가 가능하다면 내부결재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셋째, 좀 더 구체적인 기타 합당한 사유의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4-2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입니다. 위의 4가지 유형 중 출석인정결석과 질병결석, 무단결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학교장이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진로를 위한 경연참석에 대한 기타결석 처리 : 해당학생의 진로를 위해 기타결석으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학교 장은 타 학생과의 형평성,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타결석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기타결석 처리 관련 서류 : 만일 기타결석 처리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구체적인 기타 결석의 가이드 라인 :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결석도 하나의 결석으로 간주되어 해당학년 이수를 위한 출석을 독려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의 해당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조치 등 관련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질의

Q 질의

OO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제2외국어 이수단위는 몇 단위여야 하나요? (해당고등학교는 6단위랍니다)

질문2. 만약 제2외국어를 4단위만 이수해도 된다면 해당고등학교에서 다시 2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6단위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면 나머지 2단위만 해당고등학교에서 이수해도 되나요?

질문4. 교육청이 인정하는 4단위를 인정받을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회신 2016-04-2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일반 고등학교의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교과(군)는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로 편성되어 있고, 필수 이수 단위는 16단위(특수목적고 12단위)입니다. 생활·교양 교과(군)에서 16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므로 민원인이 질의하신 제2외국어의 이수 단위 여부 등 질문1,2,3

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4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공통 지침으로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이 지침에 따라 OO광역시교육청에서도 '2015학년도 OO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별첨1〉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자녀가 이 절차에 따라 제2외국어(독일어)를 이수하였다면 이수단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3 전문상담교사로 전과 가능 여부 문의

Q 질의

다른 과목의 교사가 대학원 진학 후 전문 상담 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 교사로 전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전직이 가능하다면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재량으로 별도로 모집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0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마치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갖춘 경우 전문상담교사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과 전과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과목별 퇴직, 휴직 등 시·도별 교원 수급 상황과 신규채용 인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4 출석인정결석 관련 질의

Q 질의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학생 한 명이 집이 전소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하루 결석으로 했습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보니 1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개근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학교장의 판단 하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는지요. 부득이한 사유의 범주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08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9호) 별지8호에는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출석인정결석, 기타결석 등으로 조치 가능하며, 해당 사유별로 학교장의 판단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약식 결재를 통해 결석의 종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55 다문화 학생의 초등학교 입급 관련 문의

Q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학생의 입학처리 건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제결혼부부의 베트남 어머니 쪽 자녀로 베트남에서 7학년까

지 재학 중이던 학생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원합니다. 7학년 과정의 이 학생의 경우에 학제를 낮추어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한지요?

A 회신 2016-05-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해당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7학년까지 재학 중이라면 국내의 학력인정 범위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자로 보여 집니다. 다만, 해당학생의 학업성취능력 및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하급학년(하급학교급)으로 입급을 원할 경우 이를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학력인정범위를 벗어나서 상급학년 입급에 대한 제한 조치로 상기에서 제시한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하급학년으로의 입급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하급학년 입급시 학력인정범위가 기존의 학년인정을 받지 않음을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5학년에 입급하여 7일 정도 다닌 후 중학교 1학년으로의 학력재산정을 통한 중학교 입급이 어려움)

56 집단급식소의 경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Q 질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집단급식소의 경우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5-0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표시하여 안내(게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18개 식품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따라서 학교에서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 시는 이를 월간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단식단표는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7 중·고등학교에서의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 요청

Q 질의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1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교육기자재 사용시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복잡한 계산 수행,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의 이해,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위하여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다.' 교과서에서도 계산 능력 배양이 목표가 아닌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이 목표인 활동에서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에 필요한 경우 공학적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시 각종 경력 인정 여부

Q 질의

교육공무원 임용 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호봉으로는 반영되나 교육경력으로는 반영 안되고, 교육공무원 임용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호봉으로는 반영되지 않으나, 연구실적으로는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공무원 임용 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 초임호봉 획정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에 따라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임용전 경력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해당 기간 중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함),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력으로는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 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재직 중 취득한 경우 경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보아 호봉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제3항에 의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위는 1.5점, 그 밖의 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평정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9 종교동아리 개설 가능 공문 발송 요청

Q 질의

초등학교 교사 입니다.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를 개설하는 시기인데, 학교에서 종교 자율동아리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5-1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동아리활동이란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집단 활동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에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종교동아리의 경우, 개설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인 만큼 학생의 자발적 참여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교육활동 내용에서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자율동아리의 개설은 교육과정 문서나 생활기록부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 지역 사회의 특성 등 다양한 교육적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승인할 사항이므로 별도의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60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방안 개선 문의

Q 질의

첫째 기간제 교사 혹은 사립 정교사 선발시 선발의 평가 내용과 평가기준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담당기관의 장학을 받을 것과 둘째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용성적을 수능과 같이 등급화하거나 자격화 해서 기간제교사 혹은 사립 정교사 선발시 혹은 교육청 인력풀 선발시 유용한 자격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일정 정도의 평가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2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 교사 선발시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장학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취지 및 교육이념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 임용시험 성적을 수능과 같이 등급화, 자격화하여 사립학교 교사 선발시 자격기준으로 사용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자는 의견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수과목의 경우에는 임용시험 미실시에 따른 기간제교원 응시 기회 제한, 기존 기간제교원들의 불필요한 임용시험 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61 UP 및 KMOOC의 학생부 또는 자소서 기재 여부 문의

Q 질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시 해당 KMOOC 및 UP 수료 관련 내용이 학생부, 자소서 등에 등재 가능한지 여부 및 자소서 작성 예외조항을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25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UP, University-level Program) : 대학이 개설한 대학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K-MOOC는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2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소프트웨어(SW)교육 내용 등에 관한 정보 요청

Q 질의

정부에서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 할 예정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관련 일정과 상세한 교육 과정 교육 교재의 정보를 공개해 주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3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우리부는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5년 9월 23일에 고시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초등학교는 5~6학년의 '실과'에서, 중학교는 '정보' 과목에서 SW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단, 새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5~6학년 적용 시기는 '19년부터이므로 '18년까지는 학교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서 SW교육을 선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19년부터 필수로 배우게 될 소프트웨어(SW) 교육 내용은 첨부 파일 '별책10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과정'의 p.6~7, p.12~p.16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학교 등에서 활용 가능한 보조 교재에 관한 정보 등은 인터넷 주소 http://softw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는 '17년도에 개발 예정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맞춰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63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관련 일조량 조사자료 제출 여부 문의

Q 질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학교교사와 198m정도이며,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학교교사와의 거리는 약225m정도 됩니다. 위 정비구역은 학교교사와의 이격거리, 대지레벨 차 및 건물높이 등을 고려했을 때 일조 영향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가검토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8] 규정에 의한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규정에 의한 일조량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A 회신 2016-06-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비구역 내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校舍)의 예상 일조량을 조사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의 경우 일조 침해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및 학교와의 이격거리 등 고려)에는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문 등을 거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 8,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4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한국사능력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문의

Q 질의

201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9월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한국사 시험 성적(2012년 9월에 합격한 것)을

올해 12월에 실시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회신 2016-06-0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에 의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012.9월 합격한 한국사능력검정 결과는 올해 응시하실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유효합니다.

65 학교장의 유고에 대한 해석 요청

Q 질의

교육부의 '2016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207쪽에서 교장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에 대하여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고 제시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시가 정하여 진 후 갑자기 근무지 밖으로의 업무상 단기 출장(도교육청, 1박2일 등)이 있을 경우, 이때 학교장은 유고 또는 궐위에 해당하는지, 교감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A 회신 2016-06-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등)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장의 유고시 교감이 교장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하여, 당연직 교원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감이 당연직 교원위원의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단기 출장 등의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66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등 관련 문의

Q 질의

2016학년도 편입생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국어 (2급) 자격증소지자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 제7호 무시험검정을 통해 상업정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설치 무역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무역학과 교직과목이 상업정보입니다. 상업정보는 전문교과인데도 일반교과인 중등 국어 정교사 2급 자격증소지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것인가요? 상업정보 교과와 국어교과는 같은 급, 자격으로 취급되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맞죠? 상업정보 교원자격증은 실기교사 자격증이 아닌것이 맞는것이죠?

A 회신 2016-07-0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우리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별표 3〕제1호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에서 '국어' 표시과목이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에서 '상업정보' 표시과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정보' 표시과목은 실기교사 자격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부 지침「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6)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기준 범위를 아래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학년도 편입생인 귀하께서는 '7호로 기준 대상자'로 해당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전문상담교사 증원 관련 문의

Q 질의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가 왜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A 회신 2016-07-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2017학년도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도교육감이 발표한 선발예정 사전예고 인원은 당해 교육청에서 퇴직자 규모, 전년도 선발자 중 미발령자 규모, 휴복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표한 개략적인 인원입니다. 우리부에서 금번 시도교육청별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을 파악한 결과,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전문상담교사 포함)의 규모는 시도별 증감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도 사전예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17학년도 교원 정원이 미확정인 관계로 향후 시험 공고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선발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부는 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하여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증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8 교원의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병급 지급 관련 문의

Q 질의

교원이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 등재가 가능한가요?

A 회신 2016-07-1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공무원 보수·여비·성과 300問 300答(안전행정부, 2013.9.)' 상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출장비와 병급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9 인사위원회 설치 등 관련 문의

Q 질의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으로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교육지원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시장, 부군수에 준하는 자(국장)자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2항에는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중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는 반드시 동일한 기관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맞는지요?

저희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본청 인사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두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기관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관내 전보, 경징계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는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제2인사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1, 제2인사위원회는 그 동일한 기관에 설치된 것을 의미하기에 독립된 개별적인 인사위원회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그리고 제2인사위원회의 성격으로 본다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히 되는 것인지 입니다. 제1이나 제2도 아닌 그냥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로 본다면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어야 하므로 부교육장이어야 하나,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은 없으므로 담당국장이 되는 것인지 입니다. 아니면, 교육지원청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봐서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9조의2 제3항에는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여성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제2호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제3호 법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도 연임할 수 있는지 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에는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7-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3항2호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 된다면, 제7조제7항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0 취학통지서 통지 시 유의사항 안내 요청

Q 질의

주재원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취학연령이 되어도 귀국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취학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기 아이의 거취를 어디에 이야기하고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지 막연할 것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되면 동주민센터로 명단이 내려오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아동의 거취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와 국제통화를 하고 출입국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A 회신 2016-07-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학아동명부에는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등)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국외신고이주신고등)에 따라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경우는 취학명부 작성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주소지로 취학통지가 됩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유학생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민원인께서 제기한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선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학통지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1 건강기록부를 교육제증명 민원사무에 포함 요청

Q 질의

전남 00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건강기록부 발급건으로 기능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부터 병무청에서 복무 법령이 바뀌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건강기록부 발급요청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건강기록부 출력기능이 나이스-보건 탭에서만 가능하여 나이스업무지원에 기능개선 질의를 하였으나, 학생 건강기록부가 교육제증명 으로 민원메뉴에서 발급되기 위해서는 학생건강정책과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고등학교 건강기록부 출력기능이 나이스-보건탭에서 출력이 가능하여, 보건교사가 출력하여 민원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행정실 직원이 나이스- 보건탭 권한을 받아 출력하라고 하는데, 행정실 직원으로 나이스- 보건 탭을 권한 받는다면, 전교생 및 졸업생 건강기록부의 개인정보가 모두 공유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A 회신 2016-07-2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현재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학생건강기록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건강기록부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민원인에게 한시적(5년간 보관후 폐기)으로 교부할 수는 있는 문서이나, 졸업생이 건강기록부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최종 졸업학교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바, 민원인(졸업생)의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2 비밀전학 방법 관련 질의

Q 질의

비밀전학으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소장 접수가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비밀전학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친부의 접근 금지도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데, 폭력건이 아니라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사건번호가 나오면 비밀전학이 가능한지 여부와 아이에 대한 친부의 접금금지가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친부가 학교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회신 2016-08-0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우리부는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 및 비밀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가능하며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3,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입증자료로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 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이 필요하신 경우 위에서 설명해 드린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3 초·중등학교 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 기준 문의

Q 질의

초·중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8-0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설립, 폐지 및 이전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 계획은 교육감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교육감이 수립한 총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교육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 개발사업의 규모와 유발 학생수, 분양공고 규모, 해당 학교 설립 지역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주시기, 개교예정 시기의 학생 수 및 인근학교 학생수용여력 등 전반적인 학교 설립 여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74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Q 질의

제 처가 2009년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부에 선발되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4년간 영어회화강사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원

이나 기간제교원과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 대우는 많이 차이가 나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육공무원법 32조에 정한 기간제 교원과 같은 지위입니까? 같다면 왜 명절보너스 등 기간제교원과의 차별이 존재합니까?

A 회신 2016-08-08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초등 영어 수업시수 증대 및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및 처우 등 관련 근거 법령이 다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자'와 '행정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자'로 나누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교원과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교원 외의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방과후 교실강사 등을 포함하여 교원 외의 자로 구분됩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를 근거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필요와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장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급여, 기타 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이 정해질 수 있지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기준보다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는 없으며(근로기준법 제15조),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 감독권의 일부로서 필요한 지침

을 정하거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시켜서 공정하고 적정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시도 교육청의 지역별 특성과 상황 등이 반영되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자격요건, 처우개선 등이 시도교육청별로 다소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학교 교사 내 소음측정 대상 및 방법 문의

Q 질의

학교보건법에 의한 소음측정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 내 소음측정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8-0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제3조제1항에서는 교사(校舍)의 정의를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체육관 등의 경우 교사(校舍)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내 기숙사의 경우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설관련 부서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음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교육인적자원부 2006.3월)에서는 학생 등이 없는 교실

안에서 교실 창으로부터 1m, 복도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2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12-24호)에서는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실시하고, 소음의 중점 검검 시기가 주로 창문을 열고 수업을 실시하는 하절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측정은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측정하여 외부소음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 문의

Q 질의

제 아이의 경우는 중국에서 초등과 중학교 및 고1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고 2,3년 과정을 4년 동안 다녔기에, 2개 이상의 국가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로 인정되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8-0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에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며, 2개 국가 이상을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12년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학교 및 해외교육기관을 이수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7 자유학기제 운영관련 공공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의

Q 질의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체험활동(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이 공공시설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경우 그 이용료(관람료, 이용료, 체험이용료 등 명칭불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체험활동의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에 앞서 타 시·도의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조례 선례 여부와 조례제정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A 회신 2016-08-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문의하신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에 대한 타 시·도의 면제조례 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만, "자유학기제"란 문구가 없더라도 각 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와 종로구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범위 이하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예시)울산 박물관 운영 조례 제 11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②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라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으로 「헌법」 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 28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제 3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예술 등에 관한 사무를, 제 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인 조례(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정에 대하여 직접 관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8 교원평가제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관련 질의

Q 질의

1. 교원평가제는 왜 하는건지?
2. 교원평가 설문조사한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원은 어떻게 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언제 시행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08-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 우리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모든 구성원(학생·학부모·동료교사)이 참여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활용하여

학교교육력을 향상시키고자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57호)에 근거하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에 활용됩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교원 또는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2.5미만(5.0 만점)으로 역량 개발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기준에 따라 '단기능력향상연수(60시간 이상)', '장기기본능력향상연수(150시간 이상)', '장기심화능력향상연수(6개월 이상)'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9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지속 여부 질의

Q 질의

학교보건법 제2조 3호 가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는 학교설립예정지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에는 아직 학교용지로 남아있으면 그 학교는 학교설립예정지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5조 4항 1호에 보면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있고, 2호에 보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 효력이 상실된 때 정화구역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였으나 학교용지로 남아있어 만약 학교설립예정지로 보게된다면 그 학교의 환경위생정화구역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나요?

A 회신 2016-08-1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5조 제4항에서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정화구역'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에 학교용지로 남아있는 경우 '학교설립예정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정화구역 효력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상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또는 폐교된 학교용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학교설립예정지로써의 관리)하는 등 학교설립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설립예정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정화구역' 효력 또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정화구역')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16.2.3.)되어 시행('17.2.4.) 예정인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소급적용 관련 문의

Q 질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승진 규정이 개정되어 평정기간이 년도에서 학년도로 바뀌었습니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에 최상위 등급하나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은 년도에 최상위 등급하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규정에 따라 2015년 이전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대회 상장 발급일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A 회신 2016-08-2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민원인께서는 평정기간이 '년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소급적용을 요청하셨으나, '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81 집중이수제의 시행 여부 질의

Q 질의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시행된 집중이수제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폐지되었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도 확실한 답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집중이수제의 폐지 또는 시행 여부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8-2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현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집중이수제와 관련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을 포함하면 학기당 11개 과목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교양교과목, 실기·실습 과목 등은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집중이수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과목입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집중이수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집중이수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급에서는 과학탐구실험, 체육,

예술교양교과목, 진로선택과목, 실기실습과목 등은 이수과목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82 장기 결석에 따른 수업일수 부족 학생 처리 절차 문의

Q 질의

2016학년도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 소아당뇨로 인해 3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42일을 결석(병결)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여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이버수업 출석 독려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학교 원격 수업 출석을 하지 않아 본교 수업일수 195일 중 출석일이 2/3(결석일 총 94일, 8월 현재)을 충족하지 않아 진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위 학생은 유예와 유급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8-3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14조에 의하면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제나 유예 절차는 당해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 유급이라 함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교육 기관에서는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수강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자와 상담하시어 유예 신청을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학적 처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교육부 후원 교외상 생활기록부 입력 가능 여부

Q 질의

올해 KBS가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3회 KBS 영상페스티벌에서 입상하여 오는 10월중 KBS 서울여의도 시상식장에서 표창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후원행사이며 KBS가 정부 공영방송인만큼 수상실적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 2016-09-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지원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외상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84 개인 창업관련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여부

Q 질의

1. 본 민원인이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진로특기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담임행동종합의견 등의 란에 기재 가능여부.
2. '학교장의 허락'이 반드시 사전승낙임의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관한 여부.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전후 사정을 보고하고 후승낙을 받으면 활동 사안들을 등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A 회신 2016-09-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지원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 내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례나 경험, 학교 외의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이나 수행한 노력, 교사와의 진로상담결과 등은 담임교사의 관찰과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의미하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교외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85 교원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질의

아파트 선관위 위원으로 봉사 하는것이 교육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동대표는 겸직의무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선관위 위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9-2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6 남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 문의

Q 질의

최근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남자공무원도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교원 또한 국가공무원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1년의 육아휴직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육공무원만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 회신 2016-09-2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은 「교육공무원법」(2016.1.27. 개정)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육아휴직 기간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87 일반병가 사용 관련 질의

Q 질의

2015년 병가 후 동일 질병으로 인한 2016년 병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A 회신 2016-09-2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 상 병가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병가 허가권자가 진단서와 해당 교사의 직무 수행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8 외국인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관련 문의

Q 질의

외국인이 한국 고등학교에 유학이 가능한지요? 그런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 회신 2016-09-2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에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입학 또는 전편입학에 대한 안내는 입학 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지역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공무원)에 의해 본인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Q 질의

맞벌이 부부이고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볼사람이 없고 아이의 유치원 취학을 위해 배우자와 아이를 배우자 근무중인 학교 근처에 있는 친지와 같이 주소지를 옮겨 거주 할 경우에 남편인 저의 가족수당을 교사인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9-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부양가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르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공무원의 주소와 다르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 등의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90 교원 연수휴직 중 대학강의 인정 여부

Q 질의

연수휴직 기간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경력(호봉)을 인정 못 받을 것이나, 교사가 해당 기간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대학강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면,

1.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경력이므로 해당 경력은 무효로 경력(호봉) 인정이 안되는지? 아니면,
2.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강사 활동을 한 것은 복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일 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책정이 되는 것이므로 경력(호봉)을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10-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1.9. 대통령령 제24299호)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의 부분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연수휴직 중 대학강의 경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91 학교규칙 중 '휴업일 등교' 관련 해석 요청

Q 질의

우리학교 규칙 제8조에 제가 궁금한 것은 '②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이 항입니다. 단순히 휴업일에 학생이 등교만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휴업일에도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 1일(하루)를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로 정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10-1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20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문서 확인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안내한 「주5일수업제 운영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1.12.)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토요일은 휴업일이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은 운영할 수 없으므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Q&A 12~13)

다만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하에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학교, 학예회, 체육대회 등의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92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의 소급 시점 질의

Q 질의

교원이 호봉정정사유가 발생하여 호봉정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의 반환 또는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급여의 반환 또는 청구시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회신 2016-10-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호봉 정정시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3 교육공무원 직무대리명령이 임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질의

질의1〉「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의 “직무대리 명령(지정)”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임용" 행위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의 “직무대리 명령(지정)”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내지 제35조의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자문대상에 당연 해당되는지요?

질의3〉「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의 “직무대리기간”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경력란에 등재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요?

A 회신 2016-10-1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직무대행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임용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직무대행 건이 자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임용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직무대행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인사기록 카드에 명시적으로 등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9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추천제도 운영 가능 여부 질의

Q 질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대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절차의 이행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묻는 문의입니다.

A 회신 2016-10-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부모지원팀]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의 11에 의거 학교장이 추천 기준·절차 및 추천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95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 관련 질의

Q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운동부지도자의 임용후 인건비(급여)까지 포함하는건가요?

A 회신 2016-10-1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란 학교장이 학생선수 지도 및 관리에 필요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 후 1년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총 경비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통상 1년 단위로 계약 후 고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3항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6 보건교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문의

Q 질의

1977년에 ○○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3월에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법 상 보건교사 자격이 있으나, 미처 발급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보건교사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10-1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에서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게 교원자격증의 검정 및 수여가 위임 및 위탁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우리부 고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6년도)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졸업하신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7 질병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으로 변경 가능 여부

Q 질의

질병휴직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휴직 신청시의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임이 뒤늦게 진단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조 12항에 의한 자율휴직을 이용하여 휴직을 1년 더 연장하여 치료도 하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10-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복직 시 임용권자는 휴직자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을 요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총 2년의 질병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직의 연장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소속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8 교원의 병가 후 연가, 질병휴직의 사용 관련 문의

Q 질의

〈질문1〉 저는 교육공무원(교사)로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병가를 사용한 후 또 병이 생겨 입원을 하려고 연가를 10일 정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복무를 '연가', 사유는 '병원 입원'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질병 휴직을 사용할 때 진단서의 진단 몇 주이상 나와야 됩니까?

〈질문3〉 일반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때, 사유는 무엇으로 적어야 합니까? '개인사정' '가사일'휴식' 등으로 적어도 됩니까?

〈질문4〉 누계 6일이상의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은 감기, 1일은 복통, 2일은 몸살, 2일은 병원진료 등으로 누계 6일이 되면 어떤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까?

A 회신 2016-10-2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휴직사유 입증서류'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진단서에 그 사유(기간 포함)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학기 중에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복무 허가권자가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를 적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간누계 7일째 사용한 병가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9 공무상 병가 및 휴직 요건 관련 문의

Q 질의

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일과 중 허리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검사나 치료를 위해 공무상 병가, 병조퇴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공무상 병휴직의 요건이 되는지요? 공무상 병휴직을 하기위한 절차나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3. 치료를 하기위한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회신 2016-10-2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예규 제20호)에 따라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르며,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교육청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교원이 소설 및 시집 출판 가능 여부

Q 질의

교사가 공무원인 경우 영리업무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건전한 소설이나 시집을 출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만약 법적으로 책을 출판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교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 없이도 출판이 가능한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10-2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법」 제64 및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고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출판·판매까지 담당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 저촉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1 가해학생 조치의 병과 가능 여부

Q 질의

학교폭력문제로 최종적 조치는 2호, 5호, 7호 입니다. 근데 이 경우 1호나 2호 같은 다른 조치는 일체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병과 조치가 가능한지 답을 바랍니다. 병과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A 회신 2016-11-0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결정을 위해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조치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102 학교 시설을 신설, 증설, 개보수하여 무상공급 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Q 질의

기존 기타교실을 일반교실로 개·보수 공사 후 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지요? 또한 일반교실 25학급을 신설하여 증축 후 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 2016-11-0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 으로 인하여 유발된 취학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신설, 증설 또는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하여 개발사업 으로 유발된 취학 수요의 해소에 기여하였다면, 무상공급 또는 기부채납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 간에 부담금의 감면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3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당구장 설치 허용 가능 여부

Q 질의

2017년 2월 4일 이후에는 초등학교 상대 정화구역내에서는 당구장은 정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바로 영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11-0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당구장이 과거에 비해 유해인식이 많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학교 학생의 당구장 이용가능성이 적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16.2.3.)되어 시행('17.2.4.)될 예정이며, 동 사항의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04 장애인 교원 구분 모집 관련 문의

Q 질의

유·초·중등 임용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임용시험 장애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 장애 응시자는 따로 학교를 지정해서 본다고 하던데 맞나요? 장애와 비 장애를 구분없이 대우해 주십시오.

A 회신 2016-11-0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수험번호는 지역, 응시과목, 성별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이 수험번호 상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사실을 비장애인과 구분하는 경우는 시험시간 연장, 보조장비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구분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3%이상

고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3% 미만 기관은 해당 연도 채용 공무원 총수의 6%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별도 구분 모집함에 따라 장애인이 합격하게 되어 비장애인의 채용이 줄어드는 피해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5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병원 관련 문의

Q 질의

임용고시를 준비 중 입니다.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꼭 학교 해당지역 국공립 및 종합병원에서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11-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임용고사 최종합격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전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업무 처리 병원에서 발급하는 결과서 모두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최종합격자 거주지와 합격지역 소재 병원과 무관합니다.

106 학생 보호자의 범위 관련 질의

Q 질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특수학교입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대다수가

무연고자이며 법적으로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누구인지? 어디까지를 학부모로 보아야 하는지?

1)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이나 시설원장은 학부모 자격이 가능한지?

2)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원장이나 생활재활교사가 학부모 자격이 가능한지?

3) 만약 2)문항이 학부모 자격이 가능하다면 시설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사무국장 등)도 학부모 자격이 가능한지?

4) 만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일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조치와 함께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누구에게 이수하도록 통보하여야 되는지?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는 누구에게 하는지?

5) 시설 거주 학생이 아니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주 양육자가 조부모일 경우에 조부모에게 학부모 자격이 가능한지?

A 회신 2016-11-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1) 보호자로서 가능합니다.

2) 현재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현재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의 위임을 받은 특수교육학생을 관리하는 직원도 가능합니다.

4)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교육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보호자로서 가능합니다.

107 초등학교 영어문법 교육 반대

Q 질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영어 문법이 교육 중 이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어문법 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관련된 입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A 회신 2016-11-1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은 단순 지식으로서의 영어 문법 교육이 아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을 포함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기위주의 문법 교육을 지양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기능 학습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역량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영어과 교육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역등급 구분기준에 대한 질의

Q 질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구분되어 있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도서지역, 벽지지역,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된 리스트만 나와 있어서 도서지역 및 벽지지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11-2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의 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의 지역 등급별 배점 기준표에 의해 구분되고 있으며, 벽지지역은 가지역(39점이상), 나지역(31점이상~38점이상), 다지역(23점이상~30점이하), 라지역(15점 이상 22점 이하) 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도서지역은 가지역(31점이상), 나지역(23점이상~30점이상), 다지역(15점이상~22점이하), 라지역(14점 이하)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09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등 문의

Q 질의

자율연수휴직은 2016년부터 도입되어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아이 당 육아휴직 1년씩은 재직 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8년에서 두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1년씩을 더하면 10년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11-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 자율연수휴직은「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호 제12항에 따라서「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휴직대상이며, 재직기간의 확인은 소속교육청의 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이며 학기단위로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휴직 허가여부는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사항이므로,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rt

Ⅲ

고등교육

1 학교법인 정관상 교원의 정년을 겸임교원에게도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

Q 질의

학교법인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 정관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에 대하여도 이 정관상의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이 경우 정관상의 규정때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교원의 자격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지?

③ 정관상의 규정은 전임교원에만 적용되어 겸임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06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정관상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구 전임교원)에 해당함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겸임교원은 정관상의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질의

Q 질의

사립 전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 이번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에 따른 적용관련 업무 및 절차 검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관련 학칙 적용기한 관련동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 학칙 적용을 언제까지 완료하면 되는지 적용기한이 궁금합니다.
2.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대학도서관위원회) 관련 '대학의 10조제1항(해당 대학의 장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동법에 따라 반드시 대학의 장이 대학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생복지정책과]

대학도서관진흥법이 '15.9.28.시행됨에 따라, 향후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주셔야 하며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학교별 학칙 등의 개정 절차나 시기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2016년 상반기 대학사정에 따라 2016년까지는 학칙으로 반영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장 소속의 위원회로, 반드시 대학의 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 법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학도서관 직원중심이 아닌 본부의 주요 부서장에 포함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대학입시원서 비환불 관련 문의

Q 질의

아들이 ○○대학교에 응시하였는데, 타 대학교와 같은 시간대에 일정이 겹쳐 어쩔 수 없이 ○○대학교 응시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문의한 결과 아직 응시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서비 9만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1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2항의 1호 내지 5호와 3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에 입학전형료를 응시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2항의 1호 내지 5호"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나.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3항"

민원인의 경우는 자녀가 지원한 대학의 면접 또는 실기 등의 일정이 타 대학의 입학전형과 중복되어 미 응시한 사례로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 일정이 중복되어 미 응시한 경우에

타 대학의 전형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사례가 있으나, 민원인의 자녀가 지원한 대학은 모집요강 등을 통해 전형일정 중복으로 인해 미 응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을 공지하고 있어 입학전형료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4 권역 밖의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관련

Q 질의

◇◇대학교 대학원에 설치된 계약학과인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석좌교수입니다. 이 계약학과는 2006년에 개설되었고, 현재 6개 공기업들이 이 계약학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이 계약학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주식회사가 수도권인 △△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계약학과운영요령 4조 2항의 1호--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 계약학과 참여계약이 가능하였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직원 4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직원 3명이 재학중입니다. 상기 6개 공기업들과 2010년도에 작성하였던 참여계약이 2015년 말에 만료되어 현재 재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에 해당 기업이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시로 이전하여 계속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지방이전'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하여 위치가 100km 이상으로 멀어진 ○○주식회사가 ◇◇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수 있도록 상기 계약학과운영요령 4조2항의 각 호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체'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각 호를 추가해 주시면서, 경과조치로서 동 주식회사가 저희 학교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허락해 주시길 희망 합니다.

A 회신 2016-01-20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학협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학협력법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 등과 권역별로 계약학과를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학과운영요령」 제4조제1항은 "권역"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시·도를 벗어날 경우 대학과 산업체등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까지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현재 규정 상 권역 외로 이전한 기업과는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국가 정책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은 추후 규정개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지역 이전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한 지역의 인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등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해당 지역발전이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5 의학전문대학원 학부·석사통합과정 재학생 신분 해석 관련질의

Q 질의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부-석사 통합과정 1학년에 재학중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하려고 하니 재경부 소득세과와 국세청에서 대학원생이라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의전

원은 학부-석사과정과 대학졸업후 대학원과정으로 나뉘는데, 통합과정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이고 4학년부터 대학원과정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과정인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학부과정이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부에서는 통합과정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고등교육법상 대학생인지 아니면 대학원생인지를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의전원 통합과정이 두 개 학교가 있는데, A대학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B대학은 불가능한데 이런 사항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 회신 2016-01-27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의전원의 학석통합과정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3에 따라 학부과정과 석사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초기 3년간은 학부과정을 후기 4년은 의전원 전문석사과정을 이수 하게 됩니다. 의전원 설치를 위해서는 의대 학부과정 폐지의 선행이 요구되므로 의전원 학석통합과정 재학생들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모두 의전원(대학원) 소속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3년간에는 학부생 신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전원 학석통합과정의 학부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의 신분은 '대학원 소속의 학부생'입니다.

6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야간수업 학위취득 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Q 질의

저는 서울 소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문의 1) 저녁 6시 이후 박사학위 과정 수업 인정 여부? 본인이 다니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은 1교시(9:00)~13교시(21:00)까지 운영 중입니

다. 그래서 학교 근무시간 이후인 10교시(18:00~)이후의 수업을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박사학위)이 승진시 연구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3시간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1시간 수업을 운영한 경우(근무시간 이후 수업)인정 여부? 본인이 다니는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는 '논문지도특별세미나' 라는 과목을 매학기 1학점씩 수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표에는 3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1시간만 논문지도를 해주셔서 별도의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고 퇴근 시간 이후에 1시간을 논문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간이 시간표 상에 8교시(16:00)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위취득시 승진시 연구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27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일반대학원은 전일제 주간과정운영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의 교과목을 해당 학생들과 조율을 통해 야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의 학칙에 정한 박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한 학위 인정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승진 시 연구점수 인정 등은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시간으로 편성된 교과목의 1시간 축소운영은 부실 학사운영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운영되는 1시간으로 수업시간을 정정해야합니다. 향후 감사 등에 부실학사운영 확인 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조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Q 질의

00대학교 조교 000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토·일등 근무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화문의 상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임을 복무규정과 같이 안내 말씀 들었기에 우선 근거규정을 가지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A 회신 2016-02-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금지되는 영리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사항이며, 직에 따라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동 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총장이 겸직여부를 판단하며 겸직허가를 득할 경우 종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학과 제도 개선 건의

Q 질의

현재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에서 운용중인 '계약학과 운영요령'입니다. 상기 요령의 모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기 요령의 4조 2항에는 권역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그 경우의 내용에 포지티브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가지 경우 중 한가지에는 '주말수업은 권역 예외로 인정 하지만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면서 대학교와 동일 권역 내에 기업소유의 연수원이 있는 경우만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복수사업장이 불필요한 기업, 혹은 연수원 운영 대신 숙박비를 지불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권역 외 기업들은 계약학과의 참여가 봉쇄되는 것입니다. 즉 주말수업을 인정한다면 되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 '기업은 숙박 편이가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의 네거티브 규제만 있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조합이 권역 외의 기업들을 모아서 3자 계약을 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권역 외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수단에는 권역 외 기업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제3자의 도움 없이 대학과 직접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하나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권역 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학과를 운영한다면 권역내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학과 운영요령의 일부 조항은 산학협력을 촉진 시키자는 모법의 목적과 상반되는 포지티브 규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 회신 2016-02-1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련 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계약학과 운영요령 계약학과 제도의 의미 - 계약학과 제도는 정규 입시제도의 예외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이하 산촉법)」제8조 및 산촉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산업체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정원 외로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설치 기준 : 계약학과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이란 동일 광역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동일 광역행정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하고자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설치의 예외 허용 : 기존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권역을 벗어나도 100km 이내 위치해 있는 경우만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 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체가 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자 계약으로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권역 외 기업들이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권역별 기준 제도개선 관련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규정을 네거티브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민원인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학과는 정규입시 제도의 예외로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수능시험 등의 절차 없이 산업체 추천만으로도 대학입학이 가능하고, 부실대학의 재정확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브로커나 위장취업 등 각종 편법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는 경기경찰청이, 2015년에는 서울경찰청이 계약학과 입시 비리와 관련한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막고 계약학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계약학과를 둘러싼 환경이 신뢰할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계약학과 운영상황이 신뢰할만한 수준에 도할했을 때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다음 번 제도 개선 시부터라도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나겠습니다.

9 국립대 총장임기 만료에 따른 연봉책정 관련 문의

Q 질의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 총장의 임기가 1월 21일에 만료되어, 교수로 직명이 변동되었습니다. 국립대 총장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1월 17일 급여 지급 시에는 기존 호봉제 금액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정근수당도 지급함)1.21.자로 총장임기가 만료되고 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면서, 1.21.자로 연봉책정을 해야 합니다.(연봉제 첫 적용)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월 급여는 총장임기만료일 전후로 호봉제 금액과 연봉제 금액을 각각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 1월 급여지급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연봉책정 시에 정근수당 1회분을 제외하고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제외를 한다면 연봉책정 시에 기준호봉에 따른 정근수당 1회분을 제외해야하는지, 1월 실제로 지급된 정근수당 금액만큼을 제외해야하는지요.

A 회신 2016-02-1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평가과]

1월 급여는 총장임기 만료일 전후로 호봉제 금액과 연봉제 금액을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정산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은 1월에 기 지급하였더라도 연봉 책정 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기 시달한 운영지침(10쪽,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직원 채용 공고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어느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Q 질의

[00대학교]에서 금번 25일까지 직원채용을 하는데 '※5.기타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금년도부터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공고상에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2-23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우리 부는 00대학교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용 공고문을 수정하여 공고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대학교 등록금 대폭 인상 관련

Q 질의

현재 00대학교 00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00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부에 민원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등록금이 부당하게 올랐기 때문 입니다.저희 학교는 1학년 입학당시부터 4학년들의 등록금은 1,2,3학년들의 등록금의 약 절반정도 였습니다. 이는 4학년들은 수업도 적고 취업 나가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4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1,2,3학년 때와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학교측은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혜택을 줘서 4학년의 등록금이 삭감됐으며, 회의를 통해 이번 년도부터는 형평성 있게 4학년도 1,2,3학년과 동일한 금액을 내기로 했답니다. 이에 학생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등록금 고지서에 생각했던 금액의 2배가 나와 매우 당황스러웠고 문의를 하면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보고 이해하고 희생해달라며 그래도 1,2,3학년 때보다는 14만원 정도 싸졌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은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1,2,3학년 때는 19학점이라 8과목을 배웁니다. 4학년 때는 9학점이며, 4과목을 배웁니다. 일단 배우는 과목부터가 적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협의 후 등록금을 정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예 모르시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보고 이해해달라고 희생해 달라는 부분은 정말 학교에서 갑질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힘이 없으며 14만원 싸졌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2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A 회신 2016-02-25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학교측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결과, 00과 4학년 학생의 등록금 인상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협의 후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학년 학생의 등록금 인상폭이 타학년에 비해 매우 커 민원인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부분에 공감하여, 대학측에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그 동안 1~3학년에 비해 4학년에게만 절반가량의 등록금 인하 혜택을 준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대학, 학생측 대표 참석)들이 전 학년의 등록금 수준이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합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학측에서도 4학년의 급격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등록금책정에 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등 구제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대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점당이 아닌 학기당으로 책정됩니다. 학점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들었다고 등록금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대학원 공개 강좌 및 석사학위 수여 관련

Q 질의

1. 대학에서 학위과정 외로 공개강좌를 열수 있는데 강좌 장소를 타 지역의 대학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대학에서 논문작성 없이 학점추가로 석사학위 취득한 후 논문을 쓰고 학위를 다시 취득하고 싶다고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07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대학의 수업은 설립 주체 소유의 인가 받은 교육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밖 교육부 인가 받지 않은 학습장 수업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대학원 석사과정을 학점추가이수제로 학위취득한 자는 해당과정을 졸업하였으므로, 해당대학원에 논문을 쓰고 학위 재취득은 불가합니다.

13 연구자들의 학술정보자료 무료제공 요구

Q 질의

논문검색회사들의 학술정보자료 유료화 서비스 때문에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위축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나 학회에서 학술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증축하고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A 회신 2016-03-14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 을 위하여 유료서비스인 학술정보를 가능한 한 무료로 지원하여 이용자들이 학술연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술연구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학술정보 무료지원(전국 거점대학중심 10개대학 선정 지원)
2) RISS(한국학술정보원운영 정보서비스)를 통해 학술정보의 무료이용과 실비 복사서비스 제공
3) 주변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실비 원문복사서비스
4) 국가(교육부)의 대학라이선스 구매 지원, 일부 무료 지원. 우리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지원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에게 무료서비스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14 사립학교 대학병원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질의

저희 (사립)학교 부속병원이 학교법인의 100% 출자회사인 곳과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출자회사와 계약할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3-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학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원칙을 따라야 하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5 WEST 프로그램 참가 자격 관련 문의

Q 질의

저는 사이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데 참가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가 자격을 확대해 주실 수 없나요?

A 회신 2016-03-18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WEST 프로그램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의 하나로, 정부해외인턴사업은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을 선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WEST 프로그램은 상기 대학 중 WEST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 후 1년 이내 가능). 또한, WEST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기준에 의하여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2016년 WEST 프로그램 기본 계획 상 원격대학 및 외국 소재 대학생 참여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많은 잠재력 있는 대학생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WEST 프로그램의 참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16 대학교 신입생 엠티에서 불참비 강요 관련 문의

Q 질의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저희 학과 뿐만 아니라 여러 학과에서 비공식적인 엠티를 가는데 불참비를 걷습니다. 불참비는 과마다 다르지만 참여비의 50% ~ 100%입니다. 비공식적인 담합 엠티 참가 강요와 불참비 강요는 위법 아닌가요?

A 회신 2016-03-2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학생회비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 학기 대학생 외부행사 및 학생회비 등 관련 협조 요청」을 전국 대학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학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대학 내 규정에 따라 불참비 부당 징수를 금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 내 모든 학과에 대하여 학생행사 불참비 등 부당징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2개 학과에서 유사 사례가 발견되어, 부당한 학생회비 징수에 대하여 즉각 환불처리 및 해당 교수와 학생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일 문제 재발 방지조치하였으며, OO학과에 경우 불참비 징수에 대하여 과대 학생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으나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지도와 대학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7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Q 질의

저는 지금 대학교 박사과정 1년차 학생입니다. 근래 외국 대학에 있는 학위 프로그램(한 학교에서 학위를 준비하고 연계된 다른 대학에서 같이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을 밟고 싶은데 저희 학교와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교육법상 위배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지 저희 학교에서의 교칙상 위배되기 때문에 파견이 안되는 것인지, 만약 선례가 없었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3-23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내대학은 외국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여학위는 대학 간 협약에 따라

① 국내대학학위만 수여

②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 각각 수여

③ 공동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교육과정 세부 운영 사항(학점인정, 수학기간 등)은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18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기준 문의

Q 질의

OO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Ⅰ유형의 기준은 잘 나와 있으나, Ⅱ유형은 대학자체기준이라고 되어 있어 대학교 담당자와 연락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OO대학교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기준과 기준수립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23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입학 포기 및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확대하여 '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Ⅰ유형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며,

Ⅱ유형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유도를 위한 것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추가 확충 규모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Ⅲ유형은 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유형 선발기준에 관한 내용은 해당 학교 장학담당자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외국인 대학입학 자격 여부 문의

Q 질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 검정고시를 거쳐 미국대학에 1학기를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1학년 입학이 가능한지와 미국 고등학교 자격시험(검정고시)이 인정 여부와 만약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입학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 2016-03-2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선발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학력요건외국인 특별전형의 기본 학력 요건은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외국인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이며,

○ 재학기간의 기준은 수업 결손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외국 국적 취득 후 반드시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이수해야 함·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호자의 조건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자격 대상 기준이 학생 본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기준이며, 보호자의 외국국적 취득 여부 및 해외에서의 거주(학생과 동일한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단, 대학에 따라 보호자의 해외거주 여부를 부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그리고 국외 학력 인정시험(졸업자격시험) 관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항 9호에 따르면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으로 규정하는 바, 문의하신 미국 검정고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기본학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 교지 내 모델하우스 설치 가능 여부

Q 질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가 교지확보율 100%를 초과하는 학교 내의 유휴 토지(학교용지) 중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재원 확보와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2년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설회사에서는 임차한 토지위에 2년 후 철거를 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를 신축(신고사항으로 등기되지 않는 건축물,신고자:건설회사)한다면 제28조 제1항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3-2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는 교지 내 타인의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지는 교육 용도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교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고 해서 유휴 공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고유목적(교육, 연구 용도)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로 주된 이용자가 학내 구성원일 때에 교육지원 시설로 운영하도록 통제 가능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대 운영사업 허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사에 지적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지 내 모델하우스 건축은 교육 목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에 타인의 건축물을 둘 경우 토지사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법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됨이 마땅합니다. 이 경우 관할청인 우리부의 사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학교법인

및 학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우리부에 질의요청 공문을 통해 요건을 갖추어 질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사립학교 교직원 겸직 관련 질의

Q 질의

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해당 학교법인에서 법인 업무를 겸직하며 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및 사립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무직이고, 법인 산하의 학교라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겸직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3-3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권한으로 겸직처리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수에 관한사항은 대학 및 법인의 업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2 대학원대학 관련 문의

Q 질의

저는 학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알아보았더니 "대학원대학" 또는 "대학원대학교"라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눈이 보이더군요. "대학원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어떤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인지요?

A 회신 2016-04-0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 설치·인가 받아 설립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제30조(대학원대학)에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3 서울대학교의 국가기관 해당 여부 문의

Q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의거 국가기관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 현재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인지?
2. 현재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3. 국가기관에 해당된다면 서울대학교 소속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소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답변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이므로 서울대학교는 국립학교입니다.

답변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등)/제19조(법인회계 등)/ 제28조(수익사업 등)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국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관련법령 :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법인격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법인회계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수입사업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답변3. 해당사항 없습니다.

24 사립대학 국가 재정 지원 현황 관련 문의

Q 질의

국민들 세금으로 대학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학이 교육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사적 경제 자본을 바탕으로 이윤창출이 되는 사업이라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국가가 재정을 대학에 80%나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 의문이며,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1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고등교육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재정 세입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3년 결산기준 10.4%, 2014년 결산기준 12.1%로 귀하가 제기한 "대학재정의 국고지원 80%"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위 수치는 전체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값이며, 개별 대학의 세부 현황(예 결산 등)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다자녀 장학금 성적 관련 질의

Q 질의

아이가 3자녀이고, 올해 막내가 대학입학하여 3자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 부터는 성적이 백분률로 80%이상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3자녀이면, 어떤조건 같은것이 없이 받는것이라 알았는데, 성적이 안되면 받을수 없는것이라는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A 회신 2016-04-2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한 종류로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년부터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4년 이후 입학한 셋째이상 대학생(단, '93.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단,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자녀장학금도 국가장학금의 한 종류이므로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두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의 본연의 최소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지원하는것입니다

다만, 소득 소득최하위계층의(소득2분위 이하) 경우 등록금 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C학점 경고제를 실시하여 1회에 한해 성적이 70~80점인 경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6 일반대학원의 수업운영 형태에 대한 질의

Q 질의

일반대학원은 설립의 목적에 맞게 보통 주간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또한 일반대학원 수업에 대해서 “주간에만 실시” 혹은 “야간 가능함” 이라는 부분은 시행령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관련 시행규칙이 혹시 있는지요?

A 회신 2016-04-27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일반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거 학문의 기초 이론 및 고도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학위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반대학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전일제 주간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수의 교과목을 해당 학생들과 조율하여 주말 또는 야간에 일부 운영하실 수 있느나, 교과목 전체의 야간운영은 일반대학원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귀 교에서 해당 과정을 야간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특수대학원으로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각급학교 소속 사무직원 임용 관련 문의

Q 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시 제청 및 임용권의 위임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혹은 동조 제1항 및 교원의 임용권을 규정한 제53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위임이 가능한 임의규정인지?
2. 사립학교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여 학교의 장(총장)에게 있는 병원 소속사무직원의 제청권을 병원장(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3. 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병원 소속사무직원의 임용권도 병원장(부총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5-0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의 정관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수 없으며(사립학교법 제45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학교에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70조의2는 직원의 임용에 관한 위임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 하신 사립대학의 직원의 임용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은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 제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립학교법과 달리 부총장(병원장)이 임용제청을 하도록 정관으로 위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8 산학협력단 관련 질의

Q 질의

산학협력단 조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특별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 공익법인에 관한법률을 준용하면 공익법인은 수익사업, 임원선임, 업무감독, 회계감사, 상근직원의 수 정수 승인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무관청은 미래부, 교육부, 해당대학 총장(대학의 주무부서)인가요? 만약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된다면 산단 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예산편성, 집행, 계약 등)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규정 또는 지침이 있으나, 산학협력단에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강제규정이 없는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3. 산학협력단 별도법인이며 공공기관, 정부기관 아닐시 업무에 대한 감사원 또는 교육부, 대학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산학협력단 자체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07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1. 공익법인에 대한 적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준용하는 관련법규임 법인의 경영 및 사업등에 관해 공익법인 지위적용에 대해 확대 적용은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관련 법률이 없을 경우 학칙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대학자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계 법률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수입의 80%이상이 정부 등의 지원금으로 지원기관의 지침 등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부 및 정부의 주무부처에서 감사 및 감사에 대한 처분 요구가 가능합니다.

29 제3국 수학인정서 영사확인에 대한 문의

Q 질의

저는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자녀 대학입학에 필요한 제3국수학인정서 영사확인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재외국인특례로 입학을 하기위해서는 고교 1년과정을 포함한 2년이상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데, 방글라데시의 정치와 치안 때문에 부득이 저의 자녀는 필리핀에서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국수학인정서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받아야 된다면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05-1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우리 부에서는 국외 수학자의 대입전형 증빙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제3국 수학인정서'의 경우 영사 확인 대상문서가 아니며, 대학에서는 제3국 수학인정에 대한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모든 대학에 안내('10.5.25)한 바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제3국 수학인정서 양식을 만들어 지원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재 일부 대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동 사항을 대학에 재 안내하였습니다.

30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관련 문의

Q 질의

대학교 기획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체학과 없이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석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는데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지?
2)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모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석사과정 수요가 없어 석사과정을 폐지할 경우 박사과정만 운영해도 되는가?

A 회신 2016-05-19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 박사과정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학과 신설기준을 충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박사과정 설치는 학문 연구의 연속성 유지, 학생 모집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박사과정 설치를 신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관련 문의

Q 질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는 보통 학교마다 인턴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라 하여도 엄연히 노동을 하고 급여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당 15만원이라는 두루뭉술한 얘기로 얼마나 일하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일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여도 주당 2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인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최저임금을 지켜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정한 표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회신 2016-05-19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우선,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에 있어서 현장실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2016-89호)을 제정·시행하면서 대학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현장실습 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이 현장실습을 운영함에 있어서 동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전공 관련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학생들은 '급여'가 아닌 '실습

지원비'로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 분야 등에 따라서 교육과 근로가 혼합된 성격을 띨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성(혹은 실습기관 기여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학생이 받는 지원비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구체적인 현장실습운영계획 유무,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여부, 실습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국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2 전환복무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Q 질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5-24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대체복무제도로 1993년도 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

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총인원을 배정하고 우리부에서 세부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소관인 일반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은 13~14년에 총 700명이 선발되었으며 15~16년도는 6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사항으로 해당 제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령의 개정은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 대학교원 자격기준 법령 해석 요청

Q 질의

2년제 전문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의 학문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해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0년 이상 됩니다. 과거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다른 4년제 대학에서 타 전공으로 학위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로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대학 2년 수학(A 전공) + 30년 이상의 A 전공 관련 국가기관 근무 + (B 전공으로 학사학위 취득) + A 전공으로 석사 + A 전공으로 박사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에 A 전공 채용분야의 4년제 대학 조교수 모집에 지원을 하였는데, 해당 대학에서는 제가 B 전공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점에만 주목하여 학사학위가 동일 전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원 채용시 2년제 전문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를 졸업 후 실무경력이 있을시에는 같은 학과 4년제 학위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여 동일전공 학사학위 일치도에 적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일 전공 학사학위소지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여 당시 전문대학이던 학교가 현재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문의합니다.

A 회신 2016-05-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이 100%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됨에 따라,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이시고, 석박사 재학기간이 4년이 넘으시는 경우 조교수 상당의 대학 교원 자격을 가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실무경력이나 동일전공 학사학위일치도 적합 여부와 무관히 교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학에서 학사학위 동일 전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 이는 대학교원 자격이 아닌 지원 자격 또는 심사 기준에 대한 것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교원자격 여부

Q 질의

2년제 전문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의 학문분야와 관련된 국가기관 및 해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30년 이상 될 경우 교육부 법령『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50)』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 그리고 교육부 고시『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2014-28호)』제4조 제1호에 의하여 2년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체 및 국가기관에서 해당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인 산업체 및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실무경력을 인정하여 동일 전공 4년제 학사학위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전공 4년과 같은 학사자격이

인정되어 교원(교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일 전공 4년과 같은 학사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면, 당시 전문대학이던 학교가 현재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A 회신 2016-05-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별표에 따라 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4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교육경력 연수, 전문대학 졸업자 및 동등자격자는 7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교육경력 연수가 있는 경우 조교수 상당의 대학 교원 자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제4호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에 따라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학교에서 정한 환산율에 따라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에서 전공한 학문분야와 무관히 대학에서 교원으로 담당할 전공분야와 국가기관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일치할 경우 환산경력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국가기관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직무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학문분야의 특성, 세부 전공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전문대학 졸업자가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른 경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학사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대학교원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졸업 당시 전문대학이던 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전문대학 당시의 졸업자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의 인정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1년 수료자로 인정), 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Q 질의

지금이 재학생이 신청 가능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라 신청하려는데 보호자 부분에서 저는 아버지가 '이혼 후 관계단절'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서류 제출은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2016. 5. 19일날 이혼 도장을 찍으셔서 숙려기간까지 더해 서류가 정리되고 '이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으려면 최소 7월은 되어야 하는데 국가장학금의 서류제출 기한은 6/17 까지 입니다. 서류 제출기한을 늦추거나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능한 2차 장학금 신청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없을까요?

A 회신 2016-05-26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학기별로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학기별로 1, 2차기간이 있으며, '16년부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경우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신청기감 미준수 구제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6 국립대학 교수 초임호봉 획정 관련 문의

Q 질의

국립대학 교수 초임호봉 획정 시 학사학위(석사, 박사 학위가 아님)가 2개 이상일 때 유치원, 초중등 교원처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3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의 교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 정도에 따라 “경력연수 가감”만 적용하고, 학령 가감 및 가산연수는 유치원, 초중등 교원 등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위의 적용에 해석상 어려움에 있어 질의합니다.

A 회신 2016-05-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별표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공무원은 초임호봉 획정 시 [별표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별표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학령에 관한 사항은 위 사항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37 교육대학원 평가 및 인원감축 관련 질문

Q 질의

교육대학원 평가에 대해 질의하고자합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를 보던 도중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일부 학교는 어느 등급에도 속해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교원양성기능을 하고 있는 00대학교 교육대학원이나 00대학교교육대학원은 어느 등급에도 속해있지 않은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대학원은 교육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실시하지 않은 교육대학원은 인원 감축에 해당되지 않는지, 만약 실시했는데 나와있지 않는다면 00대학교 교육대학원과, 00대학교 교육 대학원은 몇등급을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대학원 중 2017년부터 B등급은 30%, C급은 50%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차후 또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 회신 2016-05-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3년(2015년~2017년)에 걸쳐 실시하며, 2015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새로 시작되는 제4주기 평가의 1차년도 평가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62개교에 설치된 206개 기관(교직과정·교육대학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범대학 미설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00대학교 및 00대학교는 이번년도 평가 대상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원양성인원이 과다하여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 개선 및 교원양성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 기능 폐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C등급 : 교원양성정원 30% 감축, D등급 : 교원양성정원 50% 감축, E등급 : 폐지

38 해외대학 교직과목 국내인정 관련 문의

Q 질의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대학에서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을 들었었는데 본 과목이 국내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6-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우리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졸업 전 타대학 교류는 인정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입니다. 이에 외국에서 취득한 교직이론(교육학개론)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이 아니므로 교직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사립대학 조교(일반조교) 경력 인정 문의

Q 질의

저는 2016년 2월 25일자로 국립 00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000입니다. 과거 1995.9.1-1999.8.31일까지 △△△△대학 건축과 조교로

임용이 되어 4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3.1-2..5.2.28일까지 국립 00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조교로 임용이 되어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과거 사학연금에서 받았던 퇴직금도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여 합산기여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민원을 신청한 이유는 국립대 조교 경력은 100% 인정을 받았는데, 과거 사립대(전문대) 조교 경력은 50%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A 회신 2016-06-2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규 별표1의 2-가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을 적용받아 100%인정을 받으며, 사립대학교의 조교의 경우는 동예규 별표1의 3-라-4)를 적용받아 50%를 인정받음을 말씀드립니다.

40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관련 문의

Q 질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관련 몇가지 법률을 확인했는데요, 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13조 3항 2호에 근거해, 제9조2항에서 '일정비율 35%'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35%로 적시한 구체적인 이유(산출근거 혹은 추상적 목표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7-07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육성과**]

지방대육성법령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기업 등이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5%를 설정한 이유는 법령 제정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실적 30%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며 동 조항이 채용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건인 점을 고려하여, 現 권고비율 보다 상향 설정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1 인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전문대학원 강의 운영 관련 문의

Q 질의

현 대학 소재지 외에 다른 지역에 강의실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서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경우, 고등교육법 상 분교로 봐야하는지 여부와 해당 강의실의 면적 등 강의실을 만들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정 존재 여부, 대학교수가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일 경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하게 되면 복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7-13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의 학습장은「고등교육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소재지 외 타지역에서 강의는 교육부의 학습장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아울러, 교사 기준 면적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3항 별표3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고등교육법」제15조(교직원의 임무)

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수업 등)에 의거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복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42 대학에서 양질의 취업처 정보안내 요청

Q 질의

대학에서 양질의 취업처 정보를 학생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 회신 2016-07-1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우선, 대학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취업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취업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관심분야 및 적성에 따른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맞는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과(전공)별 진로 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안내·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안전한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대학 내 취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학연산 협동과정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질의

Q 질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협동과정)에서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구원 또는 기업과 협동과정을 하려면 수업도 들어야하고, 연구도 해야하는데 연구원/기업과 학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에는 학생이 연구실에서 상주하다가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방문하면 되는데, 연구원/기업과 학교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수강과 실습이 병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 기준으로 1년은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나머지 1년은 연구원에서 상주하며 연구와 논문작성에 집중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있는지요?

A 회신 2016-07-2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는 매년 각 대학으로 안내하는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학연산협동과정 운영은 학·연·산간 체결한 협약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소·산업체 간 협약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과정 운영해야 하며, 학사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업 연한 등은 타 학위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기시 바랍니다.

44 산학협력단 회계 등록 재산에 대한 운영 처리

Q 질의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의료 관련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내년 8월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등으로 구축된 (고가)장비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내 의료기기시험검사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내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센터)을 설치하고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기 구축된 (고가)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08-01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 상 해당 의료기기시험검사 장비의 산학협력단 소유에 문제가 없고, 학교내에서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재산으로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이 해당 장비를 운용하였다면, 운용 결과 발생되는 수익은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추후 조사계획을 세워 본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대학 캠퍼스 이전 관련 문의

Q 질의

대학이 존재하면서 캠퍼스를 추가 설립할 경우 교육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기는 대학캠퍼스의 기본 충족요건(시설 위주로)같은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것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일반 대학 설립시에는 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A 회신 2016-08-0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민원인이 제기하신 민원은「대학의 위치변경 인가」와 관련한 사항으로 보이며, 대학이 위치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교지/교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전 예정 지역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적합 결정을 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등 교육기본시설을 교육·연구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기숙사, 강당 등 지원시설과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등 연구시설, 기타 부속시설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46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의 직종 문의

Q 질의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와 간호사 및 병원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서기(보), 서기, 주사, 사무관 등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다른 종류의 공무원인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와 간호사 및 병원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나요?

A 회신 2016-08-2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직원의 직종을 문의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특수법인으로,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소속 교직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47 대학교 인문계 출신 취업자 전형 지원가능 대학교 문의

Q 질의

회사생활 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실업계 출신만 취업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출신 취업자전형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8-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특성화고(구.실업계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특성화고 등 재직자 특별전형(정원 외 선발)'이며, 이와 별도로 '취업자 전형(정원 내 선발)'은 출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직기간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취업자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현황은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부 전형 방법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 안내하여 드리는 순서에 따라 검색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단메뉴 활용 : 대입정보포털→대학입학정보→전형정보→전형명:취업자→검색

* 바로가기 활용 : 대입정보포털→전형정보→전형명:취업자→검색

또한,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각 대학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모집분야, 입학자격, 전형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학을 희망하시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8 서울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교직원 직종 및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관계 문의

Q 질의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공무원인가요? 충남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공무원인가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A 회신 2016-08-3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서울대학교는 2011.12월에 법인화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법인 교직원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국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며, 직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은 대학회계직, 계약직 등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 서울대학교의 부속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생 수련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78년 설립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 훈련, 의학 간호학 약학 등의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9 '대학' 과 '대학교' 표기관련 질의

Q 질의

부산교통공사 역명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사항은 본역명 아래 부기역명을 대학과 대학교로 혼용 표기하고 있는데, 〈예시 : 대티(동주대학), 남산(부산외국어대학교)〉이를 (동주대), (부산외국어대)로 대로 끝나게 통일하여 표기하고 싶습니다. 대학과 대학교의 차이를 무시하고 ○○대로 끝을 통일하여 표기하여도 기타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9-0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8조(2011.7.21.개정)에 따라 학교의 명칭은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주대학은 2011년 동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역명의 학교 명칭 축약 사용 여부는 귀 공사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0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소득분위 산정시 처분한 재산 반영 여부

Q 질의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1학기때 소득분위가 3분위였습니다. 2학기때 10분위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 2015년 10월26일에 저희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명의의 재산(상가)를 겨우 처분하고, 2016년 2월에 다행히 신용회복에 결정되어

8년간 432,000 씩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 문자를 받고 이의신청함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가족소득을 개인별로 확인하여 본인의 재산이 과하게 있어서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가를 매매함에 있어서 3개의 호수중 2개만 적용되고 1개는 적용이 안되었다. 하지만 그리해도 소득분위는 10분위에서 변동없었습니다. 이번분기 최선을 다해서 이의신청 하겠지만, 다음 학기라도 장학금수혜를 받을려고 하오니, 제가 관련기관을 직접 의뢰하여 확인하고 정정하겠으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고등학생인 둘째도 위 사유 때문인지 2차까지 이의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행정업무의 단순한 실수로 국민이 수혜를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A 회신 2016-09-07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으로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14년까지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금융재산 등 정확한 소득·재산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부는 '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년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분위 산정시 조사된 소득·재산의 정보 갱신 주기에 따라 처분한 재산 및 퇴직한 소득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1 계약학과 가을학기 개설 및 개설 절차 문의

Q 질의

일반적으로 정규과정은 연초 즉 3월에 시작하는데. 계약학과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므로 업체에서 학교에 요구를 하였을 경우 가을학기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학교에서 가을학기에 신입생을 계약학과에 한정하여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당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회신 2016-09-12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계약학과 설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체가 대학에 교육의뢰를 하면,
2) 대학은 교육 의뢰에 대한 검토 및 설치 운영사항을 협의하게 되고,
3) 대학은 상호 계약 체결 2주전까지 교육부에 계약학과 설치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4) 그 후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면,
5) 대학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칙을 개정해야 하며,
6) 학칙 개정 완료 후 대학은 입시모집 요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1.배포)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비전임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Q 질의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의 석좌교수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 드립니다.

A 회신 2016-09-1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제2항 다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본 법령의 적용 대상으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석좌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3 계약학과 담임자격 관련 문의

Q 질의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⑥산업교육기관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한 문의입니다.

A 회신 2016-09-20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계약학과 담임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이 맡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뿐만 아니라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직책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계약학과 담임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54 임시이사 선임 관련 질의

Q 질의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정은 누가하나요?

A 회신 2016-09-2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임하게 됩니다.

55 국립대 총장임용이 승진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Q 질의

저희 대학에서 조만간 국립대학교 총장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 중에 징계위로 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국립대 교수가 총장으로 대통령께 임명받는 것이 승진임용에 해당되며, 또한 징계를 받은 교수는 국립대 총장의 후보자격에도 승진임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A 회신 2016-10-1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승진의 적용대상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승진임용방법 및 승진임용제한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및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시행령 상 승진임용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대학의 장의 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6 고른기회 특별전형 관련 문의

Q 질의

저는 현재 48세의 주거,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인 법정 한부모 여성가장입니다. 고른기회 특별전형 등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회신 2016-10-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대학이 정원 내로 선발하는 특별전형 중 하나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지역인재, 특성화고교 졸업자 등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대학이 독자적 기준에 의해 선발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에 '만학도 전형'(만25~30세 이상 등 대학별 상이), 주부, 취업자 전형'(재직기간 1년 이상 등 대학별 상이) 등을 활용하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실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계실 경우 '재직자 특별전형'에, 그외에도 재직기간 등에 제한 없이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전형 관련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대학입학정보포털' 사이트(http://adiga.kr)에서 해당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거나 대학별 입학처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1600-1615)에서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들과 전문상담원들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학·진로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험생의 내신성적과 진로 희망 대학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7 계약학과 경력인정절차 관련 문의

Q 질의

산학협력법에 명시된 산업체의 경력인정(20%범위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개설하면서 MOU상에 명시하였고, 대학의 학칙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력인정을 하는 방법차원에서

1. 매학기별로 교육과정(3학점 과목)으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 수학기간인 2년의 총 20% 범위(예: 13학점)를 일괄계산하여 졸업사정회시 경력인정으로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입니다.

A 회신 2016-10-2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제8항에 의거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나 인정 범위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과 대조하여 학점 인정 기준, 학점 인정 단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학교장이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단지 산업체 경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등 개인별 세부 검토 없이 학점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8 일반대학원 야간강의 개설 관련 문의

Q 질의

다음학기 2017학년도 1학기에 일반대학원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강의시간과 관련하여, 강의 개설 시간이 10교시~12교시(오후 6시~오후 9시)혹은 11교시~13교시(오후 7시~오후 10시)에 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회신 2016-11-0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거,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내실 있는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대학원은 전일제 주간과정 운영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소수 교과목을 일부 주말(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하는 것은 교수 및 학생들과 조율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대학원의 야간 및 주말과정 운영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59 일반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가능 여부

Q 질의

정규대학의 일반대학원 수업을 원격수업(온라인 수업)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설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11-0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제1항에 의거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 가능하나, 원격대학으로 인가받지 않은 대학은 출석 수업이 원칙으로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원은 그 학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은 불가합니다.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요령, ‘12.6월, 교육부 지침)

다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16.7월)' 발표에 따라, 대학원 원격교육을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지침 개정 이후에는 대학원 원격수업이 일부 허용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60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위과정 수업 장소의 이동(변경) 가능 여부

Q 질의

공동학위과정을 위한 협약서가 아닌 아래의 경우(공동학위과정이 아님) 예를 들어 국방대학교 1년 비학위과정(주간) 대상 학생 중 저희 대학원 정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저희 대학원과 국방대학교와 협약서를 체결(국방대학교에서 수업장소 제공)하여 모든 수업을 국방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11-0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에 의거 대학의 수업은 설립주체 소유의 인가받은 교육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타 대학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귀교의 교원이 학위과정 전 과정을 수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 등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 또는 해당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장소에서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국방대학교는 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방대학교와 귀교와의 계약학과 설치는 불가)

61 전문대학 설립시 호텔 관련 학과 생길 경우 부속시설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

Q 질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과 관련된 과가 생길경우 부속시설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11-09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대학의 부속시설은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호텔은 부속시설에 포함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62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관련 문의

Q 질의

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2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의 법령을 적용 시, 우리 대학에서는 2009년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신규임용 되었던 자가 중간에 의원면직 등으로 퇴직을 할 경우, 위의 법령 적용 시, 누적 채용인원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11-1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따라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하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자도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3 체육 특기자 사전 내정(사전 스카웃)은 적법한가?

Q 질의

현재 대학 감독이나 고교 지도자 또는 일부 체육계 인사들이 관여하는 사전 내정(스카우트) 선발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A 회신 2016-11-1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체육특기자 전형의 사전 스카우트 금지는 1998년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방지 대책'에 포함되어 시행되었으며, 현재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하여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불법·부정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Part

Ⅳ

교육안전정보

1 사이버대학의 역사전공 신설 검토 요청

Q 질의

야간대학 및 대학원온라인 등 사이버대학 포함하여 학부과정과 사이버대학원 과정에 역사 관련 전공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통해 원래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으나 불가피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 진학을 택했었던 많은 이들에게 사학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12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취업 관련 학과로 진학했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역사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제28조(학생의 정원)에 따르면 전공의 설치와 정원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학교시설 사용승인 시 적용해야 하는 법규는?

Q 질의

학교시설의 사용승인과정에서 서로 의견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질의합니다. 연면적 864.57m^2 를 건축허가 받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869.57m^2로 약 5m^2 넓은 면적으로 건축법시행령12조(경미한변경 : 높이변경없음. 층수변경없음. 구조변경없음. 소방시설변경없음) 규정을 적용하여 일괄처리사항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자인 교육청에서는 설계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에 다시 사용승인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교육청의 행정이 적합 한 것인지, 학교시설은 건축법시행령과 다른 별도의 법규를 적용하는 것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2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감독청에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청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건축 등을 하는 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독청은 준공검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기 승인받은 면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0조(건축 등의 승인·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규정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신축·증축·대수선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즉, 동수나 층수는 변경하지 않고, 높이나 위치가 1m이하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령으로 건축허가 관련 업무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관련규정까지 확인하여 해당교육청에서 최종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요청

Q 질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학교의 운동장을 이용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지하 공사 준비를 마친 후 지상의 모든 시설을 사용 하는 중에 운동장 지하를 지하 주차장으로 2~3층을 건설하여 지상은 운동장(잔디구장)으로 사용하고 지하는 거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입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적극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18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우선 학교시설의 설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초·중·고등학교의 설립주체를 설명 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립은 교육부에서, 공립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에서, 사립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은 교육부에서, 공립과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립학교는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님의 의견처럼 고질적인 주차난이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의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제안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학교시설 준공신고서상의 시공자 및 현장관리인 서명날인 의무 여부

Q 질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준공신고에 있어서 공사시공자 및 현장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인 요건인지 여부, 즉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건축을 완료하여 준공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감리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하였으나 공사시공자 및 현장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독청(교육감)은 공사시공자 및 현장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8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 제9조(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법령에는 준공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는 준공신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과 변경승인신청, 중간검사신청 등도 동일한 사항으로 학교시설준공신고만을 더욱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시설준공신고서 상의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현장관리인(이하 “공사관계자”이라 함)의 서명을 받도록 한 취지는 공사관계자들의 책임과 보증 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법령과 설계도서에 (위)반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항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990-10-10, 붙임자료)에는 준공신고서의 시공자 서명날인이 없어도 준공신고 의무가 있는 건축주의 서명날인만 있으면 준공검사 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최종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지원 요청

Q 질의

00사이버대학교 14학점 신청했는데 139만원 나왔습니다. 너무 수업료가 비싼 것 같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1-27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00사이버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귀하는 입학장학혜택 대상으로써 1학점당 20%감면* 지원을 받아 등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1학점당 80,000원 → 62,400원, 14학점 수강시 등록금 873,600원(입학금 별도) 또한 00사이버대학교의 입학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학교 및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안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6 학교급간(초·중·고) 진학시 생활기록부 마감 이후 봉사활동시간 반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Q 질의

진학이나 진급하는 학생이 학생기록부 마감 이후에도 봉사하는 시간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적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6,중3,고3학년은 생활기록부 기록 마감을 일찍 하는 바람에 12·1월에 봉사실적이 학적부에 반영되지 않고 졸업이후 진학 학교 입학 전까지는 봉사실적을 학적부에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고지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 2016-02-05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 영역은 재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마감을 조기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마감을 해제하고 봉사실적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학생 진급(초→중→고)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봉사실적을 입력하여 반영할 수 있고 졸업 이후와 입학 전 사이의 봉사실적은 학생의 소속학교가 없어 반영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학교 건물 건축 관련 질의

Q 질의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교육청 시설과에서 건축설계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학교용지에서 건축선 이격을 얼마정도 한 후에 건축물을 짓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신청합니다.

A 회신 2016-05-03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건축물의 건축선 지정은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시 복합시설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의

Q 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을 학교시설의 복합시설로 인정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을 학교시설의 복합시설로 인정할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증축하여야 하는지, 노유자 시설로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아 증축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27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초등학교 부지 내 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2에 따라 복합시설에 해당되며, 동 시설을 증축할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9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 요청

Q 질의

폐사는 2014년 7월 31일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중소기업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급여를 "무보수"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대리인으로 기등록된 "무보수 사내이사"가 입찰대리인의 자격으로 상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대리인의 자참가자격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대리인의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의 입찰대리인은 “무보수” 급여책정에 따라 4대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함에 조달청 입찰대리인 등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줄것을 발주처에 토로하였으나 발주처의 계약담당은 4대보험 가입 증명만을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입찰대리인의 참가자격의 확인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만이 참가자격의 확인이 되는지, 입찰대리인의 등록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으로도 입찰대리인의 참가자격의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회신 2016-07-14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00대 부설중학교에서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입찰참가)에 의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10 나이스 상에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검색 관련 문의

Q 질의

본인은 00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본인은 주소(거주지) 변경으로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인적사항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담임 선생님께 요청 드렸으나, 본인의 거주지가 신축 건축물(도로명주소)인 관계로 업무포털 상에서 해당 도로명주소가 검색되지 않아 주소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신규 도로명주소 등록을 요청 드립니다.

A 회신 2016-08-30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현재 나이스 상의 주소(우편 번호를 비롯한 도로명 주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소 자료를 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주소 자료를 받아 나이스에 적용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아, 다음 업데이트까지 신축 건물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입력을 검색을 통한 방법과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현재 주소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주소 정보의 업데이트 이후 검색하여 입력하거나, 수기로 입력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디지털교과서(사회교과)의 해외사례 요청

Q 질의

2018학년부터 사회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게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외국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회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A 회신 2016-09-09 [교육안전정보국 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택적,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사회 교과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해외 디지털교과서 현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체육시설의 포함 범위 및 바닥면적 산정 기준 질의

Q 질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기준] 제5조 제2항 [별표2] 체육장의 기준면적 비고2 내용에 의하면 '실내체육시설' 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 계산시 실내체육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 샤워실, 방송실, 관람석,

기구창고, 강당, 교사실 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순수 실내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만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구창고도 포함인지, 그리고 면적 산출시 건축기준으로 센터 기준인지, 아니면 건축 내벽기준인지 질의 합니다.

A 회신 2016-10-04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장 기준면적 산정 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은 실내체육관과 화장실, 샤워실, 관람석, 강당, 무대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됩니다.

Part

V

평생교육

1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소독 및 방역기준 여부

Q 질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방역(소독)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의 경우에도 소독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1-0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설치신고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신고절차 등에 대한 것으로, 평생교육법에서는 정기적인 방역(소독)의 의무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방역(소독)에 대한 타 법령이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설치 요청

Q 질의

각 지역별로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이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학습관을 다녀아하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에도 학습관을 신설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1-0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미달과 재정악화 등으로 시·군 학습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1학기 평균 학생수가 400명 미만인 학습관을 평가대상으로 시·군학습관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2015학년도 1학기 학생수가 211명으로 기준 충족에 미달하여, 학습관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법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해당여부

Q 질의

1년 간 인천 ○○평생 교육원에 다녔습니다. 교육비 영수증이 필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가능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1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소득세법(기획재정부 소관)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의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또한 이와 관련한 법령 해석 등은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간자격증 발급 규제 관련

Q 질의

취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민간 자격증 엄격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을 취업목적 등으로 고가의 학원비를 들여 획득했으나, 쓸모없는 종이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쓸모없는 민간 자격증 남발을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 2016-01-20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민간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사람은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행정 절차를 통해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자가 될 수 있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소관부처별로 신설 금지분야에 대한 세부사항을 민간자격서비스(PQI)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자격관리자가 미등록자격을 운영하거나, 민간자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자격기본법 제39조, 제41조)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부는 한국 소비자원에 위탁하여 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불법운영 자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여부, 공인여부, 응시율, 합격률, 검정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불법 민간자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문의

Q 질의

학원 교습비 반환기준 적용에 관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 올립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기준으로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생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수강료보다 할인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강생이 장기간 강좌(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좌)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수강 등록을 하는 경우 학원과 수강생 간 환불에 관한 약관을 체결합니다. 약관 내용은 수강생이 환불을 요청하면 할인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학원의 귀속될 수강료를 할인된 수강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강생에게 환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학원법 시행령 –교습비 반환기준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회신 2016-02-0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정상금액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6 학원 홈페이지에 교습비 등의 표시 의무 문의

Q 질의

컴퓨터학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면 수업시간표나 수강료는 전혀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담신청을 하거나, 연락처를 남겨 놓아야 별도로 상담사가전화가 오거나, 직접 방문해야 알 수가 있더군요. 그럼 왠지 사기 당하는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영어학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수강료에 대해 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학원들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를 할 필요가 없나요? 수강료가 1~2만원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라 수강료와 수업 시간표가 고지가 되어있다면 비교하여 보기 좋을텐데 아쉽기만 합니다.

A 회신 2016-02-2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

비등)제3항에 의거,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강화 건의

Q 질의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3-2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원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학원은 교육시설의 하나로서 그 교습담당자인 강사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별표 3)에 따라,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유아교습 가능 여부

Q 질의

보통교과를 교습하는 보습학원의 강의실에서 초등 1학년과정(한글 및 산수)을 7살 유아에게 가르치는 것은 안된다는 지역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아를 가르칠려면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놀이를 통한 한글교육 등)을 등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시설도 조례에 따라 기타과정 운영을 위해 더 확장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학원법 제2조의 2항을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대상으로 유아가 나와있는데 왜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A 회신 2016-03-2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라

유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등록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별표 2의 '학원의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중 보통교과 계열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을 교습하는 것이며, 교습 대상은 초·중·고 학생입니다. 아울러, 학원은 동법 제8조(시설기준)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언론기관 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질의

Q 질의

평생교육법 제37조의 해설과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을 구분지어 주십시오.

A 회신 2016-05-0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로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설치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역 내에서 관할청에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등은 시도교육감 사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진학상담교사로의 임용에 대한 가능 여부

Q 질의

진로진학상담 교육대학원이 10곳에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문상담은 진로진학상담을 포괄하는 학문이므로 진로진학상담 임용 시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5-12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우리 부는 그간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개발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전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진로교육 업무 및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등현직교사에 한해 570시간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로 부전공 자격연수 이후 기존에 보유한 중등학교 표시과목 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진로진학상담'이라는 부전공 표시과목(*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1항,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을 추가로 획득하고, 중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수업 및 진로진학 관련 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받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즉,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이미 임용된 중등학교 현직교원 중에 선발된 분들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여 배치 운영되는 교사로 신규로 임용되는 중등학교 교원이 아니므로,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및 운영과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가 승인한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과정은 재교육과정으로 이는 기존의 부전공 자격연수에 의한 '진로진학상담 교사' 양성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동 과정은 입학 전 자격에 따른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이 상이합니다. 구체적으로, 입학 전 자격이 중등학교 현직교사인 경우에는 졸업 후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지만, 입학 전 자격이 중등학교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전공 신설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및 '전문상담교사'의 교육대학원 수학 의무 등과는 무관함을 안내 드립니다.

11 진로진학상담교사 임용 관련 질의

Q 질의

2017년부터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고 개설 후 전공관련 학점을 이수한 교사만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기준으로 점수를 세분화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는다면 기존의 세분화된 점수와는 상관없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되는 순위가 1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5-25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등현직교사에 한해 570시간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

은 교사로 부전공 자격연수 이후 기존에 보유한 중등학교 표시과목 자격증에 부전공으로 '진로진학상담'이라는 부전공 표시과목(*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1항)을 추가로 획득하고, 중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수업 및 진로진학 관련 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받은 교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는 그간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방안을 개선하여, 2017년도부터는 교육대학원에 '진로진학상담'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중등학교의 표시과목을 가진 현직교사의 경우에 한하여, 동 과정을 졸업 시에는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등학교 표시과목을 가진 현직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부가 승인한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 과정은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며,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교육감 등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교육대학원 졸업이 '진로진학상담교사' 임용을 담보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 질의

Q 질의

직업훈련촉진법 〈개정 2016.2.3.〉 규정 제7조의 2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닌 경우 즉,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일 경우에는 동 법이 적용되는지요?

A 회신 2016-07-25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현장실습계약 대상자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생도 포함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의 경우에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실습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과정을 병행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으로 보아 고등교육법상의 학생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생각되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에서 제외 되었으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5.12.31)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준으로 보호규정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휴일"의 유권해석

Q 질의

직업훈련교육촉진법 제9조의 2 제2항에서 휴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휴일인지, 아니면 현장 실습산업체(업체)에서 정한 휴일인지, 근로자의 날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인지, 실습계약서에서 정한 휴일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8-04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

육훈련생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표준협약서 제7조 제3항에서는 휴일 및 휴가는 갑(회사대표)이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의 제9조의 2 제2항에서 "휴일"은 갑(회사대표)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로 판단됩니다.

14 학원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Q 질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법이 사인에만 해당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지원받은 비영리단체에서 만3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학원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의사항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학교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고, 아파트 관리비로 아파트 주민(만3세~고등학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적용이 되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8-1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 사인(私人)이란 자연인과 사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인(私人)에 해당하지 않아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보조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2조 제1항사목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간 관련 문의

Q 질의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동법 규칙에서도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10-2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문해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초등)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과, “성인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이 교육부령으로 고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www.moe.go.kr) 또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le.or.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 등의 의미 질의

Q 질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같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A 회신 2016-11-1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질문하신 문구는 말 그대로 그 문구 앞의 용어와 대등한 관계로 취급되는 학력 또는 학교를 가리킵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수준의”로 시작하는 여러 문구는 각 개별법에서 해당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교육행정직 7급 합격자의 경우 독학학위시험 면제범위 관련 질의

Q 질의

독학학위제 취득에 있어서 교육행정직은 분류표에 없어 공채 7급이상 공무원 쪽으로가서 1차시험만 면제가 됩니다. 교육행정직도 행정직으로 분류를 하여 2차 시험까지 면제가 되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A 회신 2016-11-1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s://bdes.nile.or.kr)의 「독학 시험 합격자 과정면제일람표」를 참고하시면, 국가(지방)공무원6,7급 행정직의 경우 행정직과 행정직(재경)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일반행정직렬의 교육행정 직류로 행정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급공채 교육행정직 합격자의 경우 2차과정 시험(법학, 행정학)까지 면제됩니다.

18 외국자격의 국내 통용 가능여부 질의

Q 질의

자격기본법에는 외국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 한국의 민간자격기본법이 외국 회사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도 적용이 되는지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11-22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의 배양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국내의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한 것으로 외국자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Part

VI

기타

1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관련

Q 질의

외국에 있는 많은 학교(초·중·고)를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회신 2016-02-11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현재에도『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정하여 국내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 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임원의 개인정보 공개여부 및 정보공개의 우편 접수 타당성 여부

Q 질의

우편물로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양식으로 신원불문의 신청서가 왔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내용 하는 건도 법인 임원에 대한 개인 신상이라 사립학교법 18조2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로 사항을 지정하여 법인회의록을 절차에 따라 본교 홈페이지에 기재 하였습니다.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령의 궁극적 목표와 시행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014년에 개정되었는 법령이며 제 4조 1항에 의하면 국민의 생활·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기관장의 업무추친비에 관한 정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등 그 목적과 의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원불명의 개인에게 사립학교법인의 재단이사 임면사항에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를 전면공개 하라는 건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15조2항에 의하면 '공공기간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서명이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임위인장 없이 우편으로 접수 할 시에는 위 조항에 위배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해야 합니까?

A 회신 2016-02-26 [운영지원과]

1. 법인임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정보가 맞는지를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2. 우편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 접수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내용은 정보의 공개 결정 후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접수처리가 타당합니다

3 공무원의 겸직허가 관련 문의

Q 질의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조직은 대학내 별도 법인격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 입니다. 근무인원은 교육공무원(교원), 국가공무원(교육부) 및 자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수행 업무중, 대학내 전문연구인력(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등)에 대한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이들 연구원들의 4대보험 가입주체가 산학협력단으로 산정이 되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사업을 통해 자회사형태의 영리법인을 설립(학내 카페)하여 장애인을 고용/운영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합니다. 학내 카페는 수익을 내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별도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학내 발전기금(장학금) 등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영리법인의 대표이사(보직)로 전임교원, 의사결정 관리자로 일반직공무원의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겸직허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받는 것으로 안내받고 있는데, 일반직공무원(교육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면 교육부 장관으로 받아야하는지, 총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6-14 [운영지원과]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교 산학협력단 내 영리법인(학내 카페)의 무보수 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상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겸직허가권자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의 학교장(총장)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접수일자 관련

Q 질의

이번 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원서접수 마감이 6월 13일입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취득이 원서접수 조건인데 5월 한국사 시험 결과 발표일자가 6월 14일이므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1월 23일에 한국사시험이 있지만 최근에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려는 응시생들은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A 회신 2016-01-15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차기년도 시험일을 선정하고 공지합니다. 2016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 고지한 상태이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많은 응시생들이 1, 5, 8, 10월로 시험 일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시험일을 갑작스레 변경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채용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여부는 각 기관에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시험 시행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5월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에 대한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자격 부여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 및 접수 방법에 대한 문의

Q 질의

한국사능력시험은 1년에 1번 밖에 없는 시험입니까? 또한 한국사능력시험의 접수 방법, 시험 출제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한국사는 서기 부터 삼국유사 현대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2-1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선생님께서는 1년 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된다 말씀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현재 1년에 총 4회 실시되는 시험으로서 시험일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식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응시자의 한국사 학습 능력을 인증하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이에 설령 원하는 급수를 맞지 못한다 하여 다음에 응시가 불가한 것은 아니오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 범위는 잘 알고 계시듯 한국사 전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본 시험의 응시 계층은 매우 다양하며, 딱히 역사전공생들만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오니 관련 서적을 찾아 자체적으로 학습하실 것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접수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다음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시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식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공공저작물 활용 범위 관련 질의

Q 질의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누리 집에 탑재된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이미지가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위 저작물을 사용하여 첨부와 같은 도서를 출판하고자 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위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미지보다 고품질의 원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회신 2016-03-0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우리 위원회가 소유한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장 자료의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먼저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1) 사용 목적
(2) 간행하고자 하는 자료의 이름
(3)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서명, 등록 번호 등의 사항
(4) 요청한 회사의 직인

7 한국사능력시험 저작권 관련 문의

Q 질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를 문제 풀이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고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오픈 하였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나 수익을 올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학습목적도 저작권위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9-20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모든 회차 및 급수 기출문제를 이미 공식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돕기 위한다는 목적이라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8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관련

Q 질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중국정부 지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HSK5급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응시한 HSK성적도 인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1-2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지원 자격에 HSK 성적을 넣은 이유는 중국 현지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본 HSK 성적도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국비유학 관련 문의

Q 질의

1. 국비장학생이란 국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아니라면 정확히 국비장학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 국비장학생으로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스페인어학 점수 필요여부, 나이제한, 졸업여부(무조건 대학생만 가능 한다 던지), 선발기준 등)* 스페인으로의 장학생은 제공되지 않는다면 타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3.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이 된다면 제가 내야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부담해야하는 비용, 제공해주는 비용)

A 회신 2016-01-28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선발공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유학생은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시어서 최종 확정이 되신 분을 의미합니다. 국비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시면 국고(국가예산)으로부터 학비 및 유학관련 출귀국항공료를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국비유학생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학위는 석사와 박사입니다. 학비는 석사기간을 통상적으로 2년으로 박사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 학위 및 실질적인 학위기간에 근거하여 1년~3년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금액은 스페인의 경우 연간 18,000 유로를 받으시게 됩니다. 별도의 생활비는 드리지 않으며, 장학금과 항공료 두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선발 시 선발 분야, 분야별 인원, 지원가능하신 국가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2016년 선발 공고가 나간 뒤에 이를 확인하여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3월경 공고가 발표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제21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말한다)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제1호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같은 항 제2호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 연령 제한 없음.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자

ㅇ 대학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 취득 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성적증명서 상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로서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된 자

※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은 제출서류 중 '추천서(소정양식)'의 총장 직인으로 대신함

ㅇ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한 자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유효기간 없음ㅇ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 제시된 기준표 수준 이상인 자(유효 기간 확인)

* 기준표는 2015년도 선발공고문과 같습니다.

ㅁ 다음 해당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ㅇ「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가 당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국비유학 기 수혜자 또는 유학확정일로부터 유사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자

ㅇ 국비유학 합격을 포기했던 자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최종 확정이 되시면 국고로부터 장학금 및 유학국 파견 시의 출국항공료,

유학종료 후의 귀국항공료를 지원받으시며, 이외의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10 중국유학 정보 관련문의

Q 질의

중국의 의학대학원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회신 2016-02-05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중국에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비유학,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중국 내 자체 장학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지원 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 계획서까지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합격 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공지는 3월에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초청장학생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교육교류협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20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공지사항의 '2016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 안내'에서 구체적인 필요 요건과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자체 장학제도로는 공자장학금 및 단위 대학별 장학금 등이 있는데

이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귀하께서 직접 해당 기관이나 대학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1 남미 쿠바에도 교원해외파견 및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민원

Q 질의

교육부는 해외 거주 한민족의 한국어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특히 구한말 남미 멕시코 등지로 취업 이민을 떠난 한인 후세들(애니껭)이 현재 4~5세대에 이르러 남북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았음에도 오랫동안 모국과 단절된 생활로 인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줬으면 합니다.

A 회신 2016-02-17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재외동포 국내초청교육(모국수학) 과정을 운영하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과서 배송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멕시코, 콜럼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지에서도 6명이 모국수학과정에 참여하여 수료를 하였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모국수학과정은 현재 각 공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원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도 더욱 힘쓰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 한국어 교재 개발 요청(불가리아)

Q 질의

현재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 '한국어 교육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한국어 교재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사업이어서 건의를 드리니 불가리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A 회신 2016-02-23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교육부에서는 해외 현지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재 개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소피아 제18번학교와 함께 현지 학생들을 위한 공인교재 개발을 계획 중이며, 2016년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주불가리아대사관을 통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교재가 개발되면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 한국어교재 공급 요청

Q 질의

저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OO대학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도서관에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2년 1월 5일 재판 발행한

한국어 (v.1 ~ 8)와 한국어 회화 (V.1 ~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물에 젖어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교재를 보내주실 수 없나요?

A 회신 2016-04-06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우리 원의 교과서 및 교재 공급사업 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해외의 재외교육기관 중에서도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을 공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공급은 해당년도 공급 교과서 및 교재에 대하여 전년도 8~9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년도에 2회(2월,7월)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역도 역시 이러한 절차를 따라 현재 현지의 재외공관에 등록되어 있는 재외교육기관으로 교과서 및 교재가 공급되고 있기에, 요청하신 교재의 OO대학도서관 내지 OO교회로의 직접공급은 현행규정상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교재는 현재 www.kosnet.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ebook - 범용한국어교재 메뉴를 통하여 항시 열람이 가능하시기에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 한국어 어학당 및 대학교 유학 가능 학교 검색 방법 문의

Q 질의

외국 친구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어학당과 유학이 가능한 대학교와 대학원을 알고 싶습니다.

A 회신 2016-04-11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한국어어학당 및 대학교 유학 가능한 학교 검색 방법은 http://studyinkorea.go.kr

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서 희망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한국어학습'으로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어학당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대학정보 탭/대학검색의 순으로 검색을 하신 후 원하는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학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 해외유학과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Q 질의

해외 유학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4-22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중 '외국정부초청장학생'과 '국비유학'사업이 민원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정부초청장학생'사업은 외국정부에서 우리나라 학생을 외국정부의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사업으로 나라별로 선발하는 과정과 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선발하는 기준 및 자격과 구비서류 등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공지사항/외국정부초청장학생(선택)/'희망하는 나라명으로'검색하여 공고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유학'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석사·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년 미화 40,000달러 기준이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공지사항/'국비'로 검색하시면 2016년도 요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16 정부지원 국비유학 전공 분야 관련 질문

Q 질의

혹시 다음과 같은 전공 중 하나로도 국비유학이 가능할까요? 1. Athletic Therapy (운동선수트레이너/재활 학위) 미국/캐나다 등에서 이 학과를 졸업하면 Athletic trainer로 일할 수 있는 국제공인자격증이 나오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학위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2.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석사. 세부관심분야는 Sports pysical therapy임)한국에서는 전문대학 학사 과정이지만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석사 과정이며 단독 약 처방도 가능할 정도로 교육받음 3. Kinesiology 운동학과 특히 1번의 경우 한국에는 아예 동일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번도 심화정도가 다르고요.

A 회신 2016-08-22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현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대한민국정부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선발된 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0조 및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선발분야는 매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년도 선발시험 선발분야는 크게 지역연구, 기초학문연구, 미래성장동력연구로 구분됩니다. 현재까지의 선발시험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문의하신 바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역연구(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를 요하는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없는 연구분야라고 하여 제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께서 전공하시고자 하는 분야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선발 분야에 대해서, 시험응시자분들께서 선발분야를 선택하실 때, 본인의 응시분야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판단선택하시어 응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 응시자여러분들께 어떠한 선발 분야에 응시하셔야 된다고 강제하거나 지정해 드려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실 때, 당해 시험 공고문에 명기된 선발 분야에서 선생님의 연구분야와 가장 밀접한 분야를 선택하셔서 응시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 파견 근무 관련 문의

Q 질의

첫째, 해외 파견 근무 시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파견교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입니다. 보통 교사들은 파견을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람”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며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을 거쳐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세번째는 파견 공무원 모집에 있어서 파견 교사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9-06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첫째, 파견근무 시작시점은 양 기관의 파견 협의 및 파견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며, 본원에서는 파견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학교에 근무할 경우 학기 등을 고려하여 파견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둘째, 파견은 원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소속기관 인사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파견절차를 진행하고자 공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파견 관련 공문을 요청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공문 시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본원 근무 파견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후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국비유학시험 선발 분야 문의

Q 질의

내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발분야에 의약학 계열이 따로 없고, 자연과학 계열만 있는데 혹시 약학분야는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신 2016-09-12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2016년 금년 공고를 기준으로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공고에 의하면 선발분야는 크게 지역연구, 기초학문연구(인문,사회,자연과학), 미래성장동력 연구로 나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공분야는 학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보이오며,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사오나, 시험 주최하는 기관에서 임의로 선발분야를 지정하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연구분야와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응시를 하시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게 되심을 안내말씀드립니다.

19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해외지역 시험 시행 증설 요구

Q 질의

현재 외국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이 봄 가을로 몰려 있어, 4월 시험에 떨어지면 9월 까지 반년을 기다려야 하는 폐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 의뢰 드립니다.

A 회신 2016-11-15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개발협력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 측정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이하 토픽)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시험은 해외 공관이 주관을 하고 있어 해외 공관의 요청이 있어야 시험을 증설 할 수 있는바, 베트남 지역의 경우 결혼 이민을 위한 응시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현지 관계자의 답변과, 결혼이민 예정자들이 토픽시험보다는 과정이수(세종학당, 이민재단, 아세프 등)를 선호하고 있어 시험 추가 시험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Part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

(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 · 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 · 허가 · 승인 · 추천 ·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 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 ·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 ·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 · 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 ·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 교부의 절차 및 접수 · 처리 · 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 · 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 ·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 ·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 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 · 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 · 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 · 경유기관 · 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 · 건의민원 ·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 · 월 ·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 · 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 ·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 ·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 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 ·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 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 공정 · 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 · 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 · 신고필증 · 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고시한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 · 수입인지 ·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 · 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 · 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 · 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 ·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 ·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 · 점검 · 평가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 · 점검 ·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 점검 · 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 ·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459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4.26.〉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103호, 2016.4.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만든사람들

총 괄	감 사 관	김 청 현
	민원조사담당관	이 병 석
기획 및 편집	사 무 관	황 오 일
	교 육 연 구 사	김 태 환
	주 무 관	이 재 성
	주 무 관	박 재 향
	주 무 관	고 수 현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 쇄 일 : 2016년 12월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처 : 교육부 감사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우 30119)

인 쇄 처 : 미래인쇄
전화 : 044-866-6331

본 책자는 PDF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
(☏ 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